

증권전문인력 육성방안

강 종 만
이 주 영
최 은 경

증권전문인력 육성방안

1998. 2.

| | | | |
|------|---|---|---|
| 연구위원 | 강 | 종 | 만 |
| 연구원 | 이 | 주 | 영 |
| 연구원 | 최 | 은 | 경 |

한국증권연구원

序 言

1992년 1월의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주식시장의 개방과 외국 증권회사의 국내진출에 따라 국내 증권산업도 국제화, 개방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더구나 OECD 가입에 따라 우리 나라의 경제도 선진국으로 향한 도약의 문턱에 도달하였다.

증권시장의 세계화에 따라 증권산업 종사자의 자질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향상시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파생금융상품 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하여 국내 증권산업은 부담하는 위험의 증가와 함께 새로운 업무영역 진출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새로운 업무의 진출에 따라 증권산업 종사자의 전문화 필요성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급속도로 변화하는 금융환경에서 외국의 우수한 증권회사와 경쟁하며 살아남기 위해서는 증권산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고도화와 전문화가 시급히 요망되고 있다. 더구나 더욱 복잡다기화하는 증권시장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증권산업 종사자의 전문화와 함께 자질 향상도 이룩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증권산업에서 이미 정착된 증권분석사 제도의 변천을 살펴보고 우리 나라 증권분석사 제도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였다. 세계화되는 증권산업에서 증권분석이나 증권영업 등의 분야에서 학문적인 지식과 실무경험을 겸비하고 과학적인 투자기법을 사용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 증권분석사를 육성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는 증권산업의 선진화를 위하여 시급히 요구되는 사항이다.

또한 증권산업 종사자의 전문지식 함양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투자 상담사 제도의 개선과 증권산업 종사자에 대한 자격제도의 강화방안도 검토하였다. 증권영업의 국제화와 함께 파생금융상품의 도입에 따라 증권회사가 부담하는 위험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부적격자에 대한 감독 소홀로 파산한 베어링은행의 사례에서 보듯이 증권영업 종사자에 대한 적격성 심사는 증권산업 발전에 따라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증권전문인력으로서 증권산업 종사자에 대한 자격제도의 도입방안과 함께 적격성 심사 기준의 강화방안도 검토하였다.

본 연구보고서에서 검토한 방안들은 최선의 방안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최소한 증권산업 종사자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우리 나라 증권산업의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믿는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은 본원의 강종만 박사, 이주영 연구원, 최은경 연구원, 그리고 원고정리에 애를 많이 쓴 이미영 연구조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본 연구보고서에 실린 모든 내용은 전적으로 연구진들의 개인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8년 2월
한국증권연구원
원 장 최 운 열

목 차

| | |
|--------------------------|-----|
| I. 서론 | 1 |
| II. 증권분석사 제도 | 7 |
| 1. 미국의 증권분석사제도 | 9 |
| 2. 일본의 증권분석사제도 | 31 |
| 3. 호주의 증권분석사제도 | 46 |
| 4. 우리 나라의 증권분석사제도 | 50 |
| III. 증권분석사제도 개선방안 | 55 |
| 1. 증권분석사제도의 개선 필요성 | 57 |
| 2. 현행 증권분석사제도의 문제점 | 59 |
| 3. 증권분석사제도 개선방안 | 61 |
| IV. 증권전문인력제도 | 73 |
| 1. 미국의 증권전문인력제도 | 75 |
| 2. 일본의 증권전문인력제도 | 91 |
| 3. 우리 나라의 증권전문인력제도 | 104 |

| | |
|---------------------------------|------------|
| V. 증권전문인력의 적격성제도 | 109 |
| 1. 적격성제도의 필요성 | 111 |
| 2. 각국의 증권산업 종사자에 대한 적격성제도 | 113 |
| VI. 증권전문인력제도 개선방안 | 131 |
| 1. 제도 개선의 필요성 | 133 |
| 2. 제도 개선방안 | 135 |
| 3. 적격성제도 | 143 |
| VII. 결론 | 147 |
| 참 고 문 헌 | 151 |

표 목 차

| | |
|---------------------------------|-----|
| <표 II-1> 1차 시험대상 및 면제과목 | 37 |
| <표 II-2> 일본 증권분석사협회 회원현황 | 39 |
| <표 II-3> 시험응시자 및 합격자 현황 | 41 |
| <표 II-4> 시험합격률 현황 | 53 |
| <표 III-1> 증권분석사 시험제도 개선방안 | 64 |
| <표 III-2> 2단계 시험제도의 시험과목 | 68 |
| <표 III-3> 3단계 시험제도의 시험과목 | 69 |
| <표 IV-1> 미국의 증권전문인력제도 | 90 |
| <표 IV-2> 일본의 증권전문인력제도 | 103 |
| <표 IV-3> 투자상담사제도 | 107 |
| <표 VI-1> 증권전문인력제도 개선방안 | 142 |

그 립 목 차

| | |
|----------------------------------|----|
| <그림 II-1> 국가별 회원구성 | 26 |
| <그림 II-2> CFA자격증소지여부별 회원구성 | 27 |
| <그림 II-3> 호주증권분석사회 회원구성 | 49 |
| <그림 II-4> 증권분석사회 회원 구성 | 53 |

I. 서론

I. 서론

1980년대 이후의 세계금융환경의 변화는 세계화, 증권화, 겸업화로 요약할 수 있다.

각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금융자유화와 금융혁신에 따라 세계 금융시장의 구조적인 대변혁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러한 금융산업의 세계화로 인하여 금융산업의 국가간 장벽이 무너지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정보통신 기술의 눈부신 발전에 의해 더욱 촉진되고 있다.

금융거래에서 증권을 매개로 한 거래가 중요시되고 있다. 즉, 기업의 자금조달에서 은행을 통한 간접금융보다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금융시장에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직접 조달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더구나 은행 등 금융기관의 대출채권도 증권형태로 전환하여 유통시장에서 거래되는 대출채권의 유동화로 증권화 현상이 더욱 촉진되고 있다. 이러한 증권화 현상은 각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융개혁에 따라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금융의 증권화 현상과 함께 금융의 겸업화 현상도 급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금융산업에서 경쟁이 격화되고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간 업무영역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다. 또한 금융의 세계화 추세에 따른 금융기관간 경쟁의 격화로 인하여 금융산업의 업종간 고유영역에 대한 구분이 점차 모호해 지는 겸업화 현상이 촉진되고 있다. 더구나 1990년대의 파생금융상품 시장의 눈부신 발전에 따른 신금융상품의 개발은 금융산업의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완화를 촉진하고, 규제완화에 따라 금융의 겸업화 현상이 더욱 촉진되고 있다.

우리 나라 증권산업도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서 예외가 아니다.

1990년대 이후 자본시장과 금융산업의 대외개방 확대에 따라 외국 자본과 외국 금융기관의 영업활동이 국내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1995년 WTO 체제가 출범하고 1996년에 우리 나라가 OECD에 가입하면서 우리 나라 자본시장과 증권산업의 개방이 더욱 확대되고 증권산업도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우리 나라 증권시장도 세계화된 자본시장의 일부로서 위치를 더욱 확고히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증권산업의 개방이 더욱 확대되고 증권시장과 증권산업의 선진화를 위하여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것이다. 국내 증권산업도 이러한 개방과 규제완화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경쟁력 배양을 위한 선진제도 도입과 제도 정비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우리 나라 증권시장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증권시장과 증권산업의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증권산업과 증권시장의 발전에 저해가 되는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증권시장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시장원리가 존중되어야 증권산업의 선진화가 이룩될 수 있다. 시장원리의 존중은 국내 증권시장이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건전한 자본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될 것이다.

증권시장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증권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활성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상장기업에 관한 정보가 일반투자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정보의 유통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정보전달 기능의 왜곡은 투자자간에 보유한 정보의 차이를 확대함으로써 내부자거래를 조장하고 증권시장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신뢰도를 저하시켜 결국에는 증권시장의 발전이 저해된다. 따라서 증권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시장구조가 선진화됨에 따라 상장기업에 관한 정보의 신속한 전달과 전달된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증권전문인력의 육성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증권시장의 구조가 복잡해지고 증권산업의 세계화에 따라 증권산업에서도 선진화된 투자기법을 이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완화로 다양한 파생금융상품이 개발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금융시장의 정보효율성이 향상되어 정보가 더욱 신속하게 증권가격에 반영되고 금융자산에 내재된 위험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금융환경변화에 따라 증권산업에서도 증권분석, 증권영업, 펀드운용 등에 관한 지식과 실무경험을 겸비하고 과학적인 투자기법을 사용할 수 있는 증권전문가의 육성이 필요하게 되었다. 증권전문인력은 증권시장에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여 증권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상장기업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증권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증권시장에서 제공된 정보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제공된 정보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증권전문가가 증권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제도도 필요하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증권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증권산업과 증권시장의 세계화 추세에 따라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증권전문인력으로서 각국의 증권분석사와 증권업종사자에 관한 자격제도를 상호 인정하는 제도의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은 증권분석사를 상호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가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증권분석사간의 상호 협조를 위한 상호 교류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의 증권분석사 제도도 일본을 중심으로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정보통신기술의 발

달과 함께 세계각국의 증권시장이 단일시장으로 통합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며, 증권의 세계화 현상에 부응하여 동일한 기준에서 상호간에 인정될 수 있는 증권전문인력 육성의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증권시장의 세계화 추세에 부응하여 증권분석사와 증권산업종사자에 대한 자격제도 도입 등 증권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II장에서는 주요국의 증권분석사 제도에 관해서 알아보고, 제 III장에서는 우리 나라의 증권분석사 제도의 현황을 검토한 후, 우리 나라 증권분석사 제도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제 IV장에서는 증권산업에 종사하는 증권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실시되고 있는 미국, 일본, 우리 나라의 증권전문인력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제 V장에서는 각국에 대한 증권전문인력의 적격성제도에 대해서 알아본 후, 제 VI장에서 우리 나라의 현재 증권전문인력제도의 현황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 VII장에서는 본 연구를 요약한다.

Ⅱ. 증권분석사제도

1. 미국의 증권분석사제도
2. 일본의 증권분석사제도
3. 호주의 증권분석사제도
4. 우리 나라의 증권분석사제도

II. 증권분석사 제도

1. 미국의 증권분석사제도 1)

가. 공인증권분석사제도의 도입 및 발전

1) 연혁

미국에서는 증권산업에 종사하는 증권분석사들이 자발적으로 분석사협회를 구성하였다. 1925년에 시카고에서 처음으로 시카고증권분석사협회(Investment Analysts Society of Chicago)가 설립된 후 뉴욕 등 주요 도시에서 지역별로 증권분석사협회가 설립되었다. 지역별 조직을 전국 규모로 확대하기 위하여 뉴욕증권분석사협회는 1947년에 보스턴, 시카고, 필라델피아 지역의 증권분석사협회와 연합하여 전국 조직인 증권분석사연합회(Financial Analyst Federation: FAF)를 설립하였다.

증권시장의 발달에 따라 증권분석에 관한 전문인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1959년 6월 증권분석사연합회 연차총회에서 공인증권분석사(Chartered Financial Analyst: CFA)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1962년 1월에는 공인증권분석사협회(Institute of Chartered Financial Analysts: ICFA)의 설립을 위한 잠정기구가 발족되었다. 공

1) 본 장의 내용은 주로 ICFA(1986)을 요약하고, Sheppard(1992), SEC(1975), Treynor(1975), Norby(1975), Chatlos(1975), AIMR(1992, 1993, 1994, 1996) 등을 참고로 하였다.

인증권분석사협회 잠정기구는 공인증권분석사협회의 회원수가 일정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공인증권분석사협회의 업무를 주관하는 기관이다.

1962년에 증권분석사연합회는 회원이 지켜야 할 직업윤리강령을 제정하고, 1963년 6월에는 공인증권분석사협회 잠정기구 주관하에 증권분석사 자격시험이 최초로 실시되었다. 공인증권분석사 자격시험이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증권분석사연합회 회원들의 대폭적인 참여와 지지로 큰 성공을 거두게 되자, 1963년 9월에는 잠정기구가 해산되고 공인증권분석사협회가 정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로써 증권분석사연합회와 공인증권분석사협회가 병존하게 되었다. 증권분석사연합회는 증권분석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구성된 지역별 단체의 전국 조직이고, 공인증권분석사협회는 증권분석사자격시험에 합격한 회원의 조직으로 상호 협조하여 왔다. 1970년에 증권분석사연합회와 공인증권분석사협회는 공동으로 전문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1974년에는 유럽과 아시아의 일부 국가를 회원으로 한 세계적인 조직으로 세계증권분석사위원회(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Financial Analysts Association: ICC)를 설립하였다.

증권분석사연합회와 공인증권분석사협회 사이에 보다 긴밀한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1990년에 증권분석사연합회와 공인증권분석사협회를 통합한 상위기구로서 투자관리 및 연구협회(Association for Investment Management and Research: AIMR)를 설립하였다. AIMR은 현재 60여개국에 26,00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국제적인 비영리 단체로서, 회원들과 투자관리 업무 및 증권분석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직업인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또한 회원들의 자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회원들이 전문직업인으로서 지켜야 할 직업행위규범을 제정하고 이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있다.

2) 공인증권분석사제도의 도입배경

1940년대 이후에 시카고와 뉴욕의 증권분석사협회에서는 증권전문 인력으로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공인증권분석사를 선발하기 위한 자격시험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1942년에 뉴욕증권분석사협회는 QSA(Qualified Security Analyst)라는 전문적인 증권분석사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이 제도를 처음으로 제안한 사람은 증권분석사 업계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던 Benjamin Graham이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뉴욕증권분석사협회는 투표를 실시하였고, 투표결과 90대 6이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QSA제도의 세부적인 계획은 실제로 실행되지 못하였다.

1942년에 Benjamin Graham의 제안이 실행되지는 못했지만, 그의 제안은 이후 20년 동안 증권분석업무 전문화 작업의 초석이 되었다. 1945년 1월에 증권분석사 자격제도에 관한 논의가 뉴욕증권분석사협회에서 발간하는 The Analyst's Journal에 공식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를 계기로 증권분석사가 과연 전문적인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들이 활발히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증권분석사 자격제도 도입에 대표적인 지지자인 Benjamin Graham은 QSA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주장하였다. 자격제도의 도입은 일반투자자에게 증권분석사들이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인식시킴으로써, 증권분석사들의 취업능력이나 금전적인 보상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이 스스로가 직무에 대해 흥미를 갖도록 유발하고, 전문인으로서의 자

세를 갖도록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증권분석사연합회와 뉴욕증권분석사협회의 회장을 역임한 Lucien Hooper는 QSA제도의 도입이 많은 이점을 갖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문제점이 더 많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증권분석사 단체들이나 증권분석사를 고용한 기관과 투자자들이 이러한 전문적인 자격체제의 도입에 대해서 특별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도입에 반대하였다. Hooper는 QSA와 같이 자율적으로 관리되고 규제되는 자격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증권분석사협회 회원들의 관심이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도의 일반적인 수용태세와 그 제도가 성공적으로 실행되도록 만들려는 노력 및 결단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증권분석사들의 전문성은 지난 25년간 특별한 조직화나 제도의 도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수준으로 진보하고 성장하였다. 그리고 증권분석사들에 대한 평가체계는 강제적인 성격의 별착이 있어야만 의미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자금력과 우수인력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능력있는 회원들이 평가체계의 정착에 시간과 노력을 전적으로 투입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다. 특히 QSA의 정착을 위해서는 직업윤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해야 하는데, 증권분석사들에 대한 윤리강령(Code of Ethics)이 만들어지기 전에 평가체계를 도입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하였다.

1945년 7월경에 뉴욕증권분석사협회는 Hooper가 요구했던 윤리강령을 제정·발표하였고, 1947년에는 Benjamin Graham이 소속된 뉴욕증권분석사협회가 보스턴, 시카고, 필라델피아 지역의 분석사협회와 연합하여 전국적인 조직인 NFFAS(National Federation of Financial Analysts Societies)를 설립함으로써 전국적으로 공인화될 수 있는 자격제도 도입계획을 구체화시켰다.

뉴욕증권분석사협회의 회장을 역임한 Hooper와 N. Leonard Jarvis는 공인된 자격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회의적이었지만, 뉴욕증권분석사협회는 1951년경에 CSA(Chartered Security Analysts)라는 공인증권분석사제도의 도입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었다. Benjamin Graham이 처음으로 뉴욕증권분석사협회에서 증권분석사 자격제도의 도입을 제안한 지 10년이 경과한 1952년에 뉴욕증권분석사협회 회원들은 전국적인 공인증권분석사 프로그램의 설립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게 되었다.

뉴욕증권분석사협회의 규범 및 윤리위원회는 CSA에 대한 회원들의 찬성의견을 수렴한 후 NFFAS의 의견을 구한 결과 뉴욕증권분석사협회만의 자격제도는 수요기반이 빈약할 것이므로 전국적인 분석사협회 차원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이 관리되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새로운 자격제도 도입시 문제점은 기존 회원에 대한 예우조항(Grandfather Clause)의 범위 등에 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CSA 계획서에 따르면 기존 증권분석사(Senior Security Analyst)가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무경험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증권평가에 관한 1개 이상의 분석적인 연구실적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기타 지역의 분석사협회는 10년이라는 경력요건에 반대하고, 시험이 지식과 윤리기준 평가에 보다 치중하도록 요구하였다.

1953년에 시카고 경영대학원은 증권분석사 공인제도 도입에 관한 제안서를 증권분석사연합회에 제출하였다. 이 제안은 3단계에 걸친 8개 과목의 시험을 통해 체계적으로 분석사들을 평가하는 것이었다. NFFAS의 전문직업 윤리 및 규범위원회(PESC)와 증권분석사연합회는 시카고 경영대학원의 제안을 검토한 결과, 이 제안이 지나치게 학문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현 회원 중에서 경력을 갖춘 일부 증권분석사에게 시험을 면제하는 특혜와 명예회원의 자격을 주는 것에 대해 반대하

였다.

타 산업에서의 자격제도와 비교해 보면, 보험산업에서의 자격제도인 생명보험인수사(CLU)의 경우에는 나이·품성·학력·실무경험 등의 기준을 충족한 자만이 5개의 필수분야에 대한 4시간의 시험에 합격함으로써 자격을 취득하고 있었다. 따라서 위원회는 증권분석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자격취득을 위한 시험제도가 필수과제이며, 이는 학교와 증권분석사간의 공동작업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이 문제에 관한 좀더 명확한 업무수행을 위해 PESC 산하에 부위원회를 설치하고 Abe Kulp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였다.

시카고 경영대학원의 제안을 부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자격시험의 관리 주체를 학교로 하는 것보다는 관련업계의 지지를 받을 수만 있다면 별도의 독립적인 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보다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은 증권분석사연합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여 실현될 수 없었다.

1956년부터 시카고증권분석사협회와 전국증권분석사연합회는 매년 하계 세미나를 개최하여 필요한 지식의 표준체계를 세웠으나, 나이가 많고 이미 분석사로서 지위를 확고히 한 사람들에 대한 시험면제의 문제는 계속 남아 있었다. 증권분석사 공인화의 목적이 건전하고 적절한 전문직업적 기준을 정립하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제도도입시 시험 면제권을 특정집단에게 준다면 새로운 제도가 소기하는 목적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풀리지 않는 과제였다.

3) 솔로몬(Ezra Solomon) 교수의 제안

1953년의 시카고 대학의 증권분석사 시험제도 계획안 마련에 참여했던 솔로몬(Ezra Solomon) 교수는 1958년 말에 증권분석사연합회의 요청으로 1959년 3월에 증권분석사 공인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대체로 호의적인 반응을 얻었다. 동 제안은 이전의 제안에서는 고려하지 못했던 다음에 열거한 몇 가지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증권분석사 공인 프로그램과 시험을 관리하기 위해 잠정기구(Initiating Group)를 일정기간 동안에만 운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 기구의 구성원은 제안된 시험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1958년 12월 28일 이전에 The Analyst's Journal에 2개 이상의 연구논문을 게재한 실적이 있는 전국 증권분석사연합회의 회원들로 구성된다.

둘째, 기존 회원들에 대한 시험면 제에 관한 특혜조항에 대해 타협안을 제시하였다. 1914년 12월 31일이전 출생자는 1차 및 2차 시험을 면제시켜 3차 시험만 치루게 하고, 192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1차 시험만을 면제시켜 2차와 3차 시험을 치루게 하자고 제안하였다.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들은 새로이 결성되는 공인증권분석사협회(Institute of Chartered Financial Analysts)의 회원이 되며 이들은 명함에 공인증권분석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명시할 수 있다.

셋째, 증권분석사의 시험과정을 상세히 제시하였다. 대학교육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만드는 것보다는 증권분석사들의 실질적인 업무수행 및 경력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만드는 것이 전문화의 목적에 더욱 부합된다고 생각하고 3단계에 걸쳐 8개 과목을 시험하고자 하였다. 1차 시험은 증권거래의 기본지식을 측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2차 시험은 증권관리자로서 실무지식에 관한 지식을 측정하고, 3차 시험은 재무분야에

관한 의사결정과 정책 결정자로서 갖추어야 하는 지식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솔로몬 교수의 제안은 현실적인 것으로 평가되어 전국 증권 분석사연합회 집행위원회에 제출되었고, 이 제안은 1959년에 약간의 수정과 함께 실행되었다. 처음에 제시되었던 것과는 달리 잠정기구의 구성원은 각 지역별 협회의 역대 회장으로서 현재 실무에서 증권분석사로 활동하고 있는 자로 구성하기로 하였고, 그 수는 대략 65~70명이 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마침내 공인증권분석사제도의 도입을 위한 승인과정과 공인증권분석사협회의 설립과정을 결정하여 증권분석사 제도를 전문화하는 실제적인 목표가 달성된 것이다.

4) 시험제도의 도입과 실시 결과

1959년 6월 증권분석사연합회 이사회에서 솔로몬 교수의 제안에 기초한 증권분석사 시험제도의 도입이 승인되었다. 증권분석사 시험은 Level I, Level II, Level III 등으로 3차에 걸쳐 실시되며, 기존의 증권분석사연합회 회원에 대해서는 일부 시험면제의 특혜가 부여되었다. 즉, 기존의 증권분석사에 대한 예우조항으로 1962년 1월 현재 6년 이상 증권분석사연합회의 회원이고 나이가 33세 이상인 경우에는 1차 시험을 면제해 주기로 하였다. 단, 1차 시험을 면제받는 자는 1969년 12월까지 2차 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3차 시험은 1971년 12월까지 합격해야 한다. 또한 1962년 1월 현재 6년 이상 증권분석사연합회의 회원이고 나이가 44세 이상인 경우에는 1차 및 2차 시험을 면제해 주되, 시험을 면제받고 3차 시험에 응시가 가능한 기간은 1968년 12월까지로 제한하였다.

공인증권분석사는 증권업무에 관한 전문인으로서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을 겸비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인증권분석사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3차에 걸친 자격시험의 합격과 증권투자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증권전문인으로서 직업윤리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1962년에 시험과목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고, 1963년 3월에 318명이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등록하였다. 공인증권분석사협회는 300명 정도가 응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들을 위한 학습서를 발간하였다. 학습서에는 예제가 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독서목록에 있는 모든 논문들도 포함시켰다.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연구그룹(study group)이 생겨나기도 하였다. 시카고증권분석사협회는 소속된 증권분석사들에게 공인증권분석사 시험에 응시할 것을 권장하였으며 연구그룹을 지원해 주기도 하였다.

1963년 6월에 최초로 실시된 시험에서는 시험준비 관계로 증권분석사연합회 회원만을 대상으로 3차 시험만 실시하였고, 응시자 284명 중에서 268명이 합격하였다. 최연소 응시자는 45세였고, 60세 이상인 응시자도 33명이나 되었다. 1964년에는 처음으로 1차, 2차 및 3차 시험을 동시에 실시하였다. 공인증권분석사 프로그램은 1963년의 첫 번째 시험 실시이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1964년에는 1차 1,251명, 2차 302명, 3차 189명이 시험을 치루었으며 이 중에서 1,448명이 합격하였다. 1965년에는 1,693명이 응시하여 1,656명이 합격하였으며, 1968년에는 응시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약 8,000명이 응시하였고 이 중에서 1,829명이 합격하였다.

5) 공인증권분석사의 위상 강화

공인증권분석사제도는 증권분석사연합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활동에 힘입어 초기에 정착되었다. 발족 초기에 공인증권분석사협회는 물심양면으로 증권분석사연합회의 지원을 받았다. 특히 증권분석사연합회의 회장인 Norby는 새로 도입된 공인증권분석사제도를 조속히 정착시키고, 공인증권분석사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Norby는 증권관련 자율규제기관에서 증권분석 분야에 종사하는 직원의 자격요건으로 공인증권분석사 시험이 적합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1964년 1월에 NASD와 NYSE 등과 같은 증권관련 자율규제기관들에게 공인증권분석사를 연구인력의 자격요건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미국 증권관리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가 실시한 증권시장에 관한 특별연구(SEC's Special Study of Securities Markets)에서는 증권관련 규제기관에 종사하는 연구인력에 대한 공식적인 자격요건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Norby는 연구인력의 자격요건으로서 공인증권분석사 자격취득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1964년 6월에 뉴욕증권거래소(NYSE)는 Rule 344를 제정하여 공인증권분석사를 감독조사인력의 자격요건 중 하나로 인정하게 되었다.

공인증권분석사의 위상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증권분석사연합회는 1962년에 정식으로 윤리강령을 채택하였다. 윤리강령에는 일반인, 고객, 고용인, 기업경영자, 그리고 기타 정보제공자에 대한 증권분석사의 책임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이 윤리강령은 1963년에 뉴욕, 보스톤, 워싱턴 등 자체 윤리강령이 있는 3개 지역 협회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협회에서 채택되었다.

또한 공인증권분석사협회의 윤리규범위원회(Ethics Standards Committee)는 증권분석사연합회의 윤리강령을 기준으로 하여 공인증권분석사협회의 윤리강령과 행위지침(Guideline)을 제정하였다. 공인증권분석사 시험에 윤리과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윤리강령과 행위지침의 제정은 특히 중요시되었다. 1963년 9월에 공인증권분석사협회 회장인 Steward Sheppard는 새로 채택된 증권분석사연합회 윤리강령을 모태로 하여 윤리강령을 마련하고, 1964년에 공인증권분석사협회는 윤리강령과 행위지침을 채택하였다. 공인증권분석사협회는 증권분석사들이 전문직업윤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공인증권분석사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윤리지침과 내규 등에 명시하였다. 또한 1968년 이후부터는 공인증권분석사들로 하여금 「윤리적 행동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를 매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윤리를 확립하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나. 현행 공인증권분석사제도

1) 공인증권분석사의 자격요건

공인증권분석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학사 학위를 소지하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될 수 있는 투자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시험은 매년 1회 실시되는데, 3차에 걸친 시험을 순차적으로 합격해야 한다. 공인증권분석사 자격은 실무경험을 중시하기 때문에 시험응시서류에는 실무경력과 관련된 추천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추천서 요건은 공인증권분석사나 AIMR 회원의 추천서 1부와 근무회사의 상위 직급자의 추천서 1부 또는 근무회사의 상위 직급자의 추천서 1부와 투자전문가의 추천서 2부가 필요하다.

공인증권분석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격시험의 합격과 함께 실무경험이 필요하다. 실무경험 요건으로는 투자 의사결정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요구된다. 실무경험으로 인정되는 근무분야는 투자 의사결정과정의 일부로서 채무, 경제, 통계자료를 수집 또는 평가하거나 응용하는 분야, 위의 활동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감독 또는 교육하는 업무분야 등이다. 이러한 요건외에 전문직업인으로서 직업윤리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2) 공인증권분석사 시험과목과 합격률

공인증권분석사 시험은 윤리교육에 중점을 두어 1차, 2차, 3차 시험에 모두 윤리과목을 포함하고 있다.

1차 시험(Level I)은 학문적인 지식과 능력의 점검에 중점을 두어 자산평가 및 포트폴리오 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과 함께 투자가치평가 및 관리를 위한 방법론(Tools and Concepts that Apply to Investment Valuation and Management)에 관한 지식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 Fundamentals of Ethical and Professional Standards
 -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Professional Standards of Practice
- Quantitative Methods and Statistics
- Fundamentals of Economic Analysis
 - Macroeconomic Analysis and Policy
 - Microeconomic Analysis
 - International Issues
- Financial Statement Analysis: U. S. and International
- Fundamentals of Asset Valuation
 - Equity and Fixed-income Securities
 - Other Assets
- Fundamentals of Portfolio Management
 - Introduction to Capital Market Theory
 - Portfolio Policy and Asset Allocation

2차 시험(Level II)은 1차 시험에 비해 보다 전문적인 지식의 평가에 중점을 두고 자산가치평가(Asset Valuation)에 관한 지식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 Applying Ethical and Professional Standards
- Applying Quantitative Methods and Statistics

- Applying Economic Analysis
- Applying Financial Statement Analysis
- Capital Market Theory
- Industry and Company Analysis
- Techniques of Asset Valuation
 - Equity Securities
 - Fixed-income Securities
 - Real Estate
 - Other Assets and Derivatives
- Valuation Case Study Applications

3차 시험(Level III)은 실무적인 지식의 점검에 역점을 두어 포트폴리오 관리(Portfolio Management)에 필요한 지식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 Applying Ethical and Professional Standards
- Economic Inputs
- Setting Portfolio Policy
- Portfolio Risk Management
- Asset Allocation: Domestic and Global

- Fixed-income Portfolio Management
- Equity Portfolio Management
- Real Estate Portfolio Management
- Other Assets and Issues in Portfolio Management
- Implementing the Investment Process
- Performance Measurement and Presentation Standards
- Portfolio Management Case Study Applications

1986년부터 1995년까지 10년 동안 증권분석사 시험의 합격률은 1차 시험 54~62%, 2차 시험 54~74%, 3차 시험 71~82%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또한 시험제도가 도입된 이후부터 1995년까지의 평균 합격률은 1차 시험 61%, 2차 시험 66%, 3차 시험 77%로 비교적 높은 합격률을 보이고 있다.

다) 공인증권분석사 관련 기관

공인증권분석사제도와 관련된 기관으로는 AIMR, 증권분석사연합회, 공인증권분석사협회, 연구재단(Research Foundation) 등이 있다. AIMR은 증권분석사연합회와 공인증권분석사협회가 통합하여 만든 증권분석사 단체의 상위기구이다. 그러나 산하의 증권분석사연합회와 공인증권분석사협회는 별도 기구로서 고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증권분석사연합회는 증권분석 업무에 종사하는 자들로 구성된 일종의 동업자

단체로서 지역별로 조직되어 있으며, 회원에 대한 투자정보 및 서비스의 제공, 교육훈련 실시, 전문지식 습득, 공익 증진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인증권분석사협회는 공인증권분석사로 구성된 자율규제기관으로서 공인증권분석사 자격시험을 주관하고 회원에 대한 교육을 주요 업무로 한다. 연구재단은 공인증권분석사협회의 산하기구로서 공인증권분석사를 위한 교육, 연구조사, 자료 발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투자관리 및 연구협회(Association for Investment Management and Research: AIMR)

가) 기능

AIMR은 투자관리자와 증권분석사에 대한 교육과 심사 그리고 전문직업 행위규범의 유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Education), 전문직업 행위 및 윤리(Professional Conduct and Ethics), 전문직업 실무 및 고취(Professional Practice and Advocacy) 등으로 구분된다.

교육에 관해서는 회원을 위한 세미나 등 교육 프로그램을 주관하고, 회원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교육을 위하여 출판물과 Financial Analysts Journal, CFA Digest 등의 정기간행물을 발간하고 있다. 전문직업 행위규범 측면에서는 증권투자산업에서 고도의 윤리적이고 전문직업적인 규범을 고양하고자 전문직업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문직업인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규범을 준수토록 하기 위해 「행위규범편람(Standards of Practice Handbook)」을 발간하고 있다.

전문직업 실무 및 고취분야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첫째, 미국 및 전세계 자본시장과 투자실무에 영향을 주는 법적 및 전문 직업적 주요 과제 등을 적절히 조사하고 이를 관리한다. 둘째, 투자관리자의 투자성과 보고서 완전한 공개(full disclosure)와 공정한 발표(fair representation)를 촉진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 셋째, 기업과 증권분석사간의 기업정보 유통 등에 관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정보위원회(Corporate Information Committee)를 운영한다. 마지막으로 「기업정보 보고서(Corporate Information Report)」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기업정보 보고서는 기업이 제공하는 제반 정보의 질과 정확성 등을 비교·분석한 투자분석가들의 평가요약서이다.

나) 회원의 자격

AIMR의 회원은 정회원(Regular Member)과 준회원(Affiliate Member)으로 구분된다. 정회원은 학사학위를 소지하거나 이와 동등한 교육이나 실무경험을 갖추어야 하며, 다음 요건 중 1개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인정된 투자의사결정분야의 전문직업인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하고 공인증권분석사 1차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둘째, 인정된 투자의사결정분야의 전문직업인으로서 6년 이상 근무하고 AIMR이 시행하는 소정의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셋째, 공인증권분석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이상의 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현재 인정된 증권관련 전문직업분야에 종사하거나 공인증권분석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윤리규약과 전문직업행위규약에 서명하고 기타 AIMR이 정한 소정의 서류에 서명함으로써 정회원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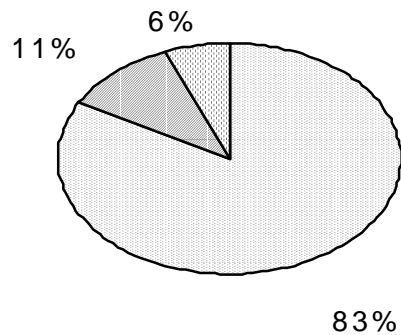
준회원은 정회원과 동등한 혜택을 받는다. 다만, 준회원은 총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준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윤리규약과 전문
직업행위규약을 준수하겠다고 서약하고, 각 지역 증권분석사연합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 회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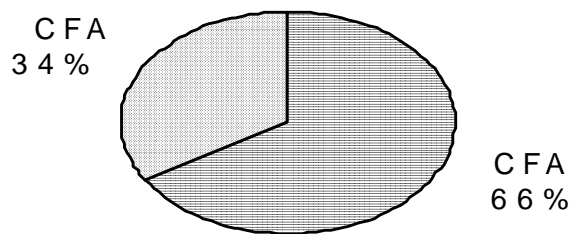
AIMR의 회원은 26,000명 이상으로 60여개국에 퍼져 있다. 지역별로
는, 미국이 21,862명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캐나다가 2,866명으로 11%를 차지하며, 기타 지역은 1,602명으로 6%를
차지하고 있다. 성별 분포를 보면, 남자가 21,832명으로 83%, 여자가
4,498명으로 17%이다.

<그림 II-1> 국가별 회원구성



공인증권분석사 자격소지여부를 살펴보면 자격소지자는 17,474명으로 전체의 66%, 자격비소지자는 8,856명으로 34%이다. 회원의 학력면에서는 박사학위 소지자 560명, 석사학위 소지자 12,517명, 학사학위 소지자 8,941명, 변호사 300명, 기타 4,012명으로 각각 전체의 2%, 48%, 34%, 1%, 15%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II-2> CFA자격증소지여부별 회원구성



직업별로 분류해 보면 투자상담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전체의 27%로 가장 많고, 브로커업무와 투자은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18%, 투자회사와 Mutual Fund 종사자는 13%, 은행(신탁부문 포함)업무 종사자는 12%, 보험회사와 투자자문에서 근무하는 자는 각각 7%와 6%, 그리고 기금관리 등의 업무종사자는 4%, 기타는 13%를 차지하고 있다. 직위별로 보면, 포트폴리오 관리자가 27%, 투자분석사가 21%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외 임원, 투자상담사 등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다.

AIMR은 윤리규약과 전문직업인으로서 준수해야 할 윤리기준을 정

하고 이를 엄격히 시행하고 있다. 전문직업행위 규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회원은 고용자에게 규약과 규범을 통보할 의무(Obligation to inform employers of code and standards)가 있다. 둘째, 회원은 관련법규와 제반규정을 준수(Compliance with governing laws and regulations and the Code and Standards)해야 한다. 이는 다시 관련 지식을 취득하고 법규를 준수하며, 법적 및 윤리적 위반행위에 대한 조력을 금지하고, 중요한 미공개 정보의 불법적인 사용을 금지하는 관리자로서의 책무 등으로 구분된다. 셋째, 회원은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투자를 추천하거나 투자행위를 시행(Research Reports, Investment Recommendations and Actions)해야 한다. 넷째, 회원은 거래의 우선 순위(Priority of Transactions)를 지키고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Disclosure of Conflicts)해야 한다. 다섯째, 회원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을 공개하고, 소개·알선 비용을 공개해야 한다. 여섯째, 회원은 타인과의 관계(Relationships with others)에서 고객에 관한 비밀을 지키고,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일곱째, 회원은 전문직업인 지정제도를 이용(Use of Professional Designation)하고 전문직업인으로서 위법행위(Professional Misconduct)를 행하지 않아야 한다.

2) 공인증권분석사협회

공인증권분석사협회는 공인증권분석사를 회원으로 한 자율규제기관으로서, 공인증권분석사 자격시험을 주관하고 회원에 대한 보수교육 등을 주요 업무로 한다.

공인증권분석사협회는 자율규제기관으로서 규범 등을 발간하고 있

다. 분석사협회는 1962년에 「윤리규약과 전문직업인 행동 규범(The Code of Ethics and Standards of Professional Conduct)」을 제정하였고 1982년에 「행위규범편람(Standards of Practice Handbook)」을 제정하여 증권분석사가 실무에서 직면할 수 있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이에 대한 행동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행동 규범과 편람은 2년을 주기로 하여 정기적으로 개정되고 있다.

또한 자율규제기관으로서 규정을 위반한 회원을 조사하고, 위반한 회원을 처벌하고 있다. 1990년까지 약 600건의 규정위반 사례를 조사하였고 위반자에 대하여 견책, 경고, 회원자격 정지, 회원자격 취소 등의 벌칙을 부과하였다. 그리고 매년마다 공인증권분석사로 하여금 「직업 및 윤리규범」을 준수한다는 서약서를 재작성하여 공인증권분석사협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공인증권분석사의 윤리의식 고양에 노력하고 있다.

공인증권분석사 자격시험의 주관기관으로서 공인증권분석사협회는 공인증권분석사 시험 응시자에 대한 교육 및 시험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실시되는 증권분석사시험의 응시자가 1995년도에는 28,000명을 초과하여 시험문제 관리와 시험실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인증권분석사에게는 실무경험과 함께 학문적인 지식의 습득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공인증권분석사협회는 회원에 대한 보수교육을 중요시하고, 이를 위한 자료들을 활발히 발간하고 있다. 증권투자와 관련된 최근의 학문적 지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공인증권분석사와 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관련된 간행물을 발간함으로써 급격하게 변화하는 증권업무에 관한 지식 전달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산하의 연구재단도 증권업무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증권

투자와 관련된 제반 간행물을 발간하고 있다.

2. 일본의 증권분석사제도 2)

가. 증권분석사제도 도입

1) 연혁

일본의 증권분석사제도는 1962년 10월 동경증권분석사협회의 설립에서부터 시작되었다. 1962년 4월에 기관투자자들을 주축으로 한 뉴욕의 증권분석사 131명이 일본을 방문했고, 9월에는 샌프란시스코의 증권분석사 92명이 일본을 방문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증권분석사제도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증권분석사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증권분석사협회를 설립하게 되었다.

뉴욕증권분석사협회를 기준으로 하여 5차례의 검토를 거듭한 결과 1962년 10월 15일에 증권, 은행, 보험, 신탁 등 각 업계의 유력인사가 모여 창립총회를 열고 동경증권분석사협회를 발족하였다. 1963년 3월에 동경증권분석사협회는 전국적인 조직인 「일본증권분석사협회(The Security Analysts Association of Japan: SAAJ)」로 발전하여 오늘날의 일본 증권분석사제도를 갖추게 되는 발판이 되었다. 1973년 6월에는 일본증권분석사협회가 해산되고 사단법인 일본증권분석사협회가 설립됨으로써 현재 형태의 증권분석사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2) 본 장의 내용은 주로 若杉敬明(1987)과 証券アナリストジャーナル(1983)을 참고로 하였다.

일본증권분석사협회는 재정적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1970년 10월에 회원제도를 개선하여 기존에 정회원-준회원-찬조회원이었던 회원제도를 개인회원-법인회원-찬조회원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1971년 1월부터는 증권분석사 양성을 목적으로 한 장기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수입의 기반이 구축되었다.

1974년에는 미국식 공인증권분석사 자격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증권분석사 자격제도 창설연구위원회가 설치되었고, 1975년 10월에는 증권분석사 자격시험 준비위원회가 설립되었다. 1976년에는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증권분석사의 행동규범 도입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1977년 10월에는 공인증권분석사 1차 시험을 위한 1단계 통신교육강좌가 최초로 실시되었고, 1978년 8월에 공인증권분석사 1차 시험이 최초로 실시되었다. 1979년 6월에 증권분석사 시험 실시 및 검정회원 자격제도 창설에 관한 대장성의 인가를 받았다. 1979년 7월에는 증권분석사 자격제도 창설연구위원회, 증권분석사 자격시험 준비위원회와 윤리위원회가 폐지되고 규율위원회가 설치되었다.

1979년 11월에 증권분석사협회 이사회에서 공인증권분석사인 검정회원의 영어 명칭을 현재의 CMA(Chartered Member of the Security Analysts Association of Japan)로 결정하고, 1980년 8월에 공인증권분석사 2차 시험을 위한 2단계 통신교육강좌가 최초로 실시되었다. 1981년 5월에 공인증권분석사 2차 시험이 최초로 실시되었고, 1987년에는 증권분석사 직업행동규범이 제정되었다. 1989년에는 증권분석사의 국제적인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노력이 결실을 맺어 제 1회 미·일 증권분석사협회 공동세미나가 개최되었고, 1991년에는 일본의 검정회원과 미국의 공인증권분석사간에 자격교환제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2) 증권분석사제도의 도입 과정

공인증권분석사제도의 도입은 일본증권분석사협회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권분석사협회를 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과 함께 이루어졌다. 일본증권분석사협회는 증권분석사 자격시험제도의 도입을 목적으로 일본증권경제연구원의 협력을 얻어 1970년 4월에 증권분석연구회를 설치하고, 1971년부터 장기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증권분석연구회는 학자와 실무전문가로 구성되었고, 증권업무 종사자가 지녀야 할 윤리와 증권 실증분석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1971년부터는 증권분석사 양성과 장래의 증권분석사 자격시험 실시를 목적으로 한 장기세미나를 시작하였다. 장기세미나는 1977년까지 7회에 걸쳐 동경과 오사카 등에서 개최되었다.

일본증권분석사협회의 설립 초기에는 예상했던 것만큼 회원의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1968년까지는 사업활동을 꾸려갈 수 있었다. 그러나 협회 설립 7년 후에는 물가상승 및 사업활동의 확대 등으로 인하여 지출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협회 수입의 90%를 차지하는 회비수입은 변동이 없어 적자가 발생하게 되었다.

1969년 일본증권업협회가 전국적인 조직으로 바뀌면서 오사카를 중심으로 회원가입이 증가하여 수지가 개선되기는 했지만 재정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었다. 적자는 계속적으로 누적되었으며 재정의 건전성 확립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따라서 재정적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앞으로의 재정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단체와 협력하여 1973년에 사단법인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일본증권분석사협회가 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재정 기반의 취약성이었다. 따라서 재정문제의 해결을 위한 일련

의 조치가 1970년부터 1973년까지 3년에 걸쳐 이루어졌다. 재정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증권회사, 은행 등 금융기관에게 협회의 찬조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요청하였다.

사단법인으로의 전환과 함께 일본증권분석사협회는 수입의 확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였다. 첫째, 입회금의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였다. 둘째, 유력한 찬조회원으로부터 임시 특별회비를 징수하였다. 셋째, 1970년 10월에 회원제도를 개정하여 개인회원(정회원/준회원)-찬조회원 제도에서 개인회원-법인회원-찬조회원 제도로 변경하고 각 지역별 정회원 협회 등 관련단체로부터 찬조금을 받았다. 넷째, 1971년 10월 이후에는 「자본시장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일본증권분석사협회의 재단기금을 확고히 하였다.

재정의 건전성 확립과 병행하여 증권분석사협회가 사단법인으로 전환하였다. 공인된 증권분석사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증권분석사에 대한 윤리규범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협회를 사단법인으로 승격시켜 협회의 사회적 인지도를 높이고 사업활동을 충실히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증권분석사협회 설립시 자본시장진흥재단, 증권, 금융, 보험, 신탁 등 관련업계가 3억엔의 기부금을 공동으로 부담함으로써 협회의 기본재산이 형성되었고, 1980년에도 1억 5천만엔의 추가적인 지원을 받아 협회의 재정이 크게 안정되었다.

공인증권분석사 시험제도 도입의 구체적인 과정을 살펴보면, 1979년 6월에 증권분석사 시험제도안이 이사회에서 정식으로 결정되고, 대장대신의 인가를 받았다. 앞에서 설명된 것처럼 일본의 증권분석사 시험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은 장기세미나 개최로부터 시작되었다. 장기세미나의 내용은 회계학, 재무제표분석, 증권분석 등에 관한 것이었고, 이러한 과목은 제 1차 증권분석사 시험과목에 해당하는 것이었

다. 장기세미나는 1971년부터 1977년에 걸쳐 동경과 오사카에서 6회에 걸쳐 개최되었고, 1977년에는 나고야에서도 개최되었다. 장기세미나의 수강자는 총 3,587명이었으며 4과목에 모두 합격한 자는 301명에 이르렀다. 1978년부터는 모든 시험응시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장기세미나를 중단하고 전국적인 규모의 통신교육을 시작하였다.

일본증권분석사협회의 체제가 사단법인으로 변경된 후 자격제도시험 도입에 관한 검토가 구체화되었고 공인증권분석사 자격제도 창설연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1974년과 1975년에는 미국과 영국의 시험제도를 조사하고 일본의 각종 시험과 자격제도를 검토함으로써 기초적인 준비에 착수하였다. 1975년 초에 공인증권분석사 자격제도 도입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증권관련업계의 압도적인 지지를 알 수 있었다. 1975년 8월에 시험준비위원회가 설치되고 시험준비를 위한 교육체계를 구성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1976년 11월에 설치된 윤리위원회는 공인증권분석사가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을 정하고 이와 함께 자격제도의 구체안이 마련되었다.

3) 도입당시의 검정회원 제도

공인증권분석사(‘검정회원’) 자격취득을 위한 시험은 증권산업에 종사하는 전문직업인이 갖추어야 할 증권분석업무에 필요한 일정수준 이상의 능력과 윤리의식의 배양에 그 목적을 두었다. 자격시험은 2차에 걸쳐 시행된다. 1차 시험은 증권에 관한 기본적 지식을 측정하는 시험이고, 2차 시험은 실무에 필요한 고도의 지식과 실무적 응용능력을 종합적으로 테스트한다.

검정회원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인회원 또는 찬조회원의

임직원으로서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 합격하고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법인회원 또는 찬조회원의 임직원이 소속된 회사를 떠나 지위를 상실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검정회원의 지위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증권분석사협회의 회원인 회사와 검정회원의 지속적인 관계가 검정회원 자격유지에 필요조건이 되었다.

자격시험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고, 1차 시험과 2차 시험은 각각 년 1회씩 시행되었다. 1차 시험에 대한 준비과정으로 증권분석사 양성을 위한 세미나 및 통신교육이 1971년부터 시행되었고, 2차 시험을 위한 2단계 통신교육은 1980년부터 실시되었다.

시험응시를 위한 자격은 1차 시험의 경우에는 일본증권분석사협회의 법인회원 또는 찬조회원의 임직원으로서 일본증권분석사협회가 시행하는 1단계 통신교육강좌 또는 세미나를 수강한 자로 제한된다. 2차 시험은 일본증권분석사협회의 법인회원 또는 찬조회원의 임직원으로서 1차 시험에 합격하였거나 1차 시험을 면제받고, 2단계 통신교육강좌 또는 세미나를 수강한 자로 응시자격이 제한되었다.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해서는 <표 II-1>에 요약된 것처럼 1차 시험의 일부과목 또는 전과목이 면제된다. 첫째, 시험제도 발족 시까지 일본증권분석사협회가 실시한 통신교육강좌 또는 세미나의 인정 시험에 합격한 자는 그 합격한 과목이 면제된다. 둘째, 특별히 정한 국가시험 등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그 합격한 과목 중에서 특별히 정한 과목이 면제된다. 셋째, 특별히 정한 실무경험자에 대해서는 일부과목 또는 전과목이 면제된다. 1차 시험 면제의 유효기간은 경우에 따라 상이하다. 전과목이 면제되는 10년 이상의 증권분석 실무경험자의 경우에는 2차 시험이 5회까지로 제한되며, 기타 과목의 면제에 대해서는 특정기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표 II-1> 1차 시험대상 및 면제과목

| 면제대상 | 면제과목 |
|--|------------------|
| <u>국가시험 합격자</u> | |
| 1. 사법시험 2차 시험에서 경제원론 또는 경제정책을 선택하여 합격한 자 | 경제 |
| 2. 사법시험 2차 시험에서 회계학을 선택하여 합격한 자 | 재무회계 |
| 3. 공인회계사 시험 2차 시험에 합격한 자 | 경제, 재무회계 |
| 4.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소지한 자 | 경제, 재무회계, 재무제표분석 |
| 5. 부동산 감정사시험 2차 시험에 합격한 자 | 경제 |
| 6.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자 | 재무회계 |
| 7. 국가공무원 등의 채용과 관련된 시험에 합격한 자 | |
| (1) 국가공무원채용 상급갑종 및 을종시험 행정구분의 전문시험(기술식)에서 경제원론을 선택하여 합격한 자 | 경제 |
| (2) 국가공무원 채용상급갑종 및 을종시험경제구분의 전문시험(기술식)에서 합격한 자 | 경제 |
| (3) 외무공무원 채용상급시험전문시험(기술식)에 합격한 자 | 경제 |
| (4) 국제전문관 채용시험 전문시험(기술식)에서 경제를 선택하여 합격한 자 | 재무회계 |
| (5) 국립국회도서관 직원채용 상급직원전문채용(기술식)에서 경제를 선택하여 합격한 자 | 경제 |
| (6) 방위청 직원채용 상급을종시험 경제구분의 전문시험(기술식의 경우에 한함)에 합격한 자 | 경제 |
| (7) 도도부현 직원의 채용상급시험의 전문시험(기술식)에서 경제원론, 경제정책을 선택하여 합격한 자 | 경제 |
| <u>실무경험자</u> | |
| 1. 대학 및 공직 연구기관에서 증권분석, 재무회계, 재무제표분석 또는 경제에 대응하는 과목에 대해 5년 이상의 교육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 | 해당과목 |
| 2. 증권회사, 증권투자신탁위탁회사, 신탁회사, 은행, 보험회사 및 이들의 관계단체 또는 법인 및 이들을 주된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에서 증권분석업무 또는 이에 준한 업무에 10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 | 전과목 |
| 3. 별도로 정해진 공익법인 및 공적연금을 취급하는 기관에서 증권분석업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에 10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 | 전과목 |
| (주) 실무경험자의 경우 상기 2, 3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본제도에 따른 2차시험의 5회까지에 한해 1차시험을 면제하는 것으로 한다. | |

나. 현행 증권분석사제도

1) 회원의 종류와 현황

앞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일본증권분석사협회의 회원은 법인회원-찬조회원-개인회원으로 구분된다. 법인회원은 증권회사, 연구기관, 투자신탁관리회사, 투자자문회사, 신탁은행, 보험회사, 그 밖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기타 기업과 조직으로 총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찬조회원은 증권 또는 신용 관계기관으로서 증권분석사협회의 재정을 지원하지만 총회에서 투표권은 없다.

개인회원은 다시 일반회원과 검정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의 공통적인 자격요건으로는 일본증권분석사협회의 법인회원이나 찬조회원의 임직원으로서 증권분석, 투자관리 또는 관련분야에 3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가진 자이거나 또는 대학이나 중앙·지방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의 증권분석 분야에서 충분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이어야 한다.

이러한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 중에서 1차 및 2차 검정회원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검정회원(CMA)이 되며 검정회원 이외의 개인회원은 3명 이상의 일본증권분석사협회 회원의 추천을 얻어 일반회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검정회원은 1987년 7월의 규정 개정으로 소속회사나 조직을 떠난 후에도 검정회원의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증권분석사협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회비는 회원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다. 1995년 현재 법인회원의 회비는 입회비

II. 증권분석사 제도

50,000엔과 연회비 50,000엔 이상이고, 개인회원의 회비는 입회비 10,000엔과 연회비 12,000엔이며, 찬조회원에 대해서는 입회비가 없고 연회비만 50,000엔 이상이다.

회원현황을 살펴보면, 1995년 3월말 현재 법인회원이 598명, 찬조회원이 173명, 개인회원 중 검정회원은 7,241명이고 일반회원은 584명이다(<표 II-2>참조).

<표 II-2> 일본 증권분석사협회 회원현황(1995년 3월말 현재)

(단위: 명)

| 업종 | 법인 | 찬조 | 개인 | |
|------|-----|-----|-------|-----|
| | | | CMA | 일반 |
| 증권 | 231 | 0 | 1,637 | 185 |
| 연구기관 | 34 | 0 | 645 | 39 |
| 신탁은행 | 15 | 0 | 655 | 26 |
| 투자신탁 | 19 | 0 | 466 | 28 |
| 투자자문 | 97 | 0 | 466 | 44 |
| 은행 | 133 | 0 | 1,276 | 100 |
| 보험 | 52 | 0 | 777 | 54 |
| 기타 | 17 | 173 | 1,319 | 108 |
| 합계 | 598 | 173 | 7,241 | 584 |

2) 시험제도와 교육과정

검정회원의 자격취득은 통신교육 이수, 자격시험 합격, 그리고 실무

경력을 필요로 한다. 즉, 검정회원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본 증권분석사협회가 주관하는 통신교육과정을 이수하고, 1차 및 2차 자격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격시험 합격과 함께 재무와 투자분석 또는 포트폴리오 관리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경우에만 일본증권분석사협회 검정회원(CMA)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일본증권분석사협회의 검정회원 자격시험 과정은 1차와 2차로 나누어지고, 두 과정 모두 통신교육과정과 자격시험으로 구성된다. 통신교육과 자격시험의 제도가 도입된 이후 자본시장의 급속한 발전과 증권투자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1978년에 시험과목 등이 변경되었고, 1992년에는 현행 통신교육내용과 자격시험과목으로 정비되었다. 통신교육교재와 시험문제는 검정회원, 학자, 실무전문가들이 출제하고 있다.

자격시험에서는 증권분석과 포트폴리오관리 과목이 가장 중요시된다. 1차 통신교육과정은 증권분석과 포트폴리오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이론과 기법 등을 다루고, 2차 통신교육과정은 증권분석과 포트폴리오 관리를 위한 지식의 종합과 실무적인 응용에 중점을 둔다. 증권산업에 종사하는 임직원들에 대한 윤리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1994-95년부터는 「윤리와 전문가 규범」이 핵심과목으로 2차 통신교육과정에 포함되었다. 통신교육과정에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법인회원 또는 찬조회원의 임직원이거나 학사학위 소유자 또는 대학 2년 과정 이상을 이수한 자로 제한되어 있다.

1차 시험은 1년에 한번 4월에 있으며, 증권분석과 포트폴리오관리, 경제학, 그리고 재무회계와 재무제표분석 등 3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시간 동안에 걸쳐 실시된다. 1차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통신교육과정에서 수강과목의 수강순서는 수강자 임의대로 선택할 수 있으나 모든 과목은 4년 이내에 이수하여야 한다.

2차 시험도 1년에 한번 시행되며 7시간에 걸쳐 증권분석과 포트폴리오 관리, 경제학, 회계와 재무제표 분석, 윤리적 직업규범, 모든 과목을 통합한 종합시험 등 5과목의 시험을 치루어야 한다. 2차 시험을 위한 통신교육과정은 1차 시험에 합격한 후 3년 이내에 이수하여야 한다.

<표 II-3> 시험응시자 및 합격자 현황

(단위: 명)

| 구교육과정 | 1 차 시 험 | | | 2 차 시 험 | | |
|---------|---------------|-----------|-----------|---------------|-----------|-----------|
| | 통신교육과정 지원자 | 시험 응시자 | 시험 합격자 | 통신교육과정 지원자 | 시험 응시자 | 시험 합격자 |
| 1986-87 | 5,508 | 5,738 | 1,917 | 190 | 198 | 126 |
| 1987-88 | 14,651 | 14,961 | 5,031 | 284 | 256 | 176 |
| 1988-89 | 14,337 | 17,681 | 7,595 | 535 | 500 | 345 |
| 1989-90 | 15,242 | 20,717 | 9,081 | 1,016 | 1,014 | 616 |
| 1990-91 | 17,592 | 22,973 | 10,756 | 1,607 | 1,632 | 927 |
| 1991-92 | 15,392 | 23,568 | 11,802 | 1,915 | 2,162 | 1,151 |
| 추가시험* | | 9,355 | 4,167 | | 1,000 | 465 |
| 1977-92 | 95,036 | 124,560 | 54,647 | 7,919 | 8,334 | 4,964 |
| 신교육과정 | | | | | | |
| 1992-93 | 18,446 | 15,195 | 6,853 | 4,006 | 2,944 | 1,278 |
| 1993-94 | 9,921 | 16,900 | 6,057 | 2,526 | 3,524 | 1,511 |
| 1994-95 | 13,451 | 18,919 | 8,054 | 1,909 | 3,346 | NA |

* 구교육과정의 마지막 해가 1991-92년이므로 1992년에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 대해 추가시험이 있었다.

검정시험 응시자 및 합격자 현황은 <표 II-3>과 같다. <표 II-3>에서 보듯이, 1차 시험 응시자는 제도도입 이후부터 1995년까지 17만 명을 넘어섰으며 합격자는 75,000명에 달하고 있다. 2차 시험 응시자는 1992년까지 총 8,334명이었으나, 1993년 이후에는 매년 3,000명 이상이 2차 시험에 응시하고 있다. 2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1992년까지 4,964 명이고, 1993년에 1,278명, 1994년에는 1,511명에 달하고 있다.

3) 미국 공인증권분석사협회와 상호 자격인정

자본시장의 급속한 국제화에 따라 일본증권분석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자격제도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1991년 2월에 미국의 AIMR과 공인증권분석사의 상호 자격인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미국의 공인증권분석사 2명이 특별히 마련된 1993-94년 검정회원 통신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하였다.

검정회원 중 749명이 1994년에 CFA/SAAJ Level I, Level II, Level III에 등록하였다. 이들 중 525명이 시험에 응시하였고 상호협정에 의한 특별시험을 통하여 32명이 미국공인증권분석사 자격을 획득하였다. 1994-95년부터는 특별시험 이외에도 CFA/SAAJ 정규 Level II, Level III과정(CMA에 대해서는 정규 Level I 이 면제됨)이 AIMR/SAAJ 상호협정에 포함되어 약 830명의 검정회원이 1995년도 CFA/SAAJ 시험에 등록하였다.

다. 일본증권분석사협회의 활동

일본증권분석사협회의 목적은 일본 증권산업의 선진화를 위하여 증권분석기술을 향상시키고 증권분석 전문가를 육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검정회원 시험을 주관하고, 국내외 관련기관에 증권분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증권산업의 세계화 추세에 부응하여 해외 증권분석사 관련단체와의 업무협조에 노력하고 있다.

미국공인증권분석사협회와 협력하여 1989년부터는 매년마다 SAAJ-AIMR 합동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AIMR과의 상호협정 체결에 따라 미국 공인증권분석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검정회원을 대상으로 특별시험이 실시되고 있다. 또한 1994년부터는 일본증권분석사협회는 자체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SAAJ-AIMR 합동세미나는 해마다 시의적절한 주제를 선택하여 주제별로 개최하고 있다. 1989년 6월에는 선물 및 옵션과 포트폴리오 관리, 1990년 2월에는 자산할당, 1991년 1월에는 국내외 투자, 1992년 3월에는 투자성과 측정, 1993년 3월에는 보통주 분석과 평가, 1994년 4월에는 투자정책, 1995년 2월에는 채권분석과 포트폴리오 관리 등이 주제로 선정되었다. 세미나 자료는 1993년과 1994년에 일본에서 일본어와 영어로 발간되었다.

그리고 일본증권분석사협회는 증권분석사 저널을 발간하고 있다. 증권분석사 저널은 월간으로 발행되며, 투자이론과 실무 그리고 증권관련 주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증권분석사 저널의 편집은 23명의 실무전문가와 학자들로 구성된 편집위원회가 주관하고 있다. 그리고 SAAJ Newsletter는 1985년 이후 회원에게 일본증권분석사협회의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3-4회 발행되고 있다.

1995-96년부터 검정회원 자격취득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 기업이나 협회의 회원이 고용한 사람 이외에도 학사학위 소지자이거나 또는 대학 2년 이상의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도 자격시험 응시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1995년 2월에는 「전문가 행동규범을 위한 실무편람」과 「전문가 행동규범에 대한 관계규정」 등의 사례집을 발간하였다. 실무편람은 개정된 규범의 해석과 투자전문가들이 실제로 매일 매일의 활동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 및 각 사례에 대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SAAJ의 직업윤리위원회는 「직업행동 규범에 관한 실행 안내」와 「직업행동의 규범과 관련된 규제」를 1995년 2월에 발간하였다. 첫 번째 안내 책자는 「증권분석사에 대한 전문가 행동규범」의 확산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되었고, 두 번째 것은 SAAJ 2차 시험과 관련된 교육 및 시험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 「윤리적 직업 규범」의 교재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일본증권분석사협회는 기업발표회 및 강연회도 개최하고 있다. 기업발표회에서는 상장회사나 곧 상장될 회사의 회장이나 임원이 개인 투자자나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회사의 현재 영업상황과 미래 전망 등을 설명하고 있다. 강연회에서는 일본 및 외국 전문가가 투자이론, 경제학, 재무, 산업과 과학기술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해 연설한다. 그리고 증권분석사를 위한 기업방문을 주선하기도 하며, 공장이나 연구실 또는 전시장 방문도 주선한다.

일본증권분석사협회의 기업공시연구그룹은 1989년 12월에 내부자거래규정에 대한 연구를 계속할 목적으로 발족되었으며 기업공시분야에서 탁월한 기업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또한 기업회계연구그룹은 증권분석사 입장에서 회계분야의 발전에 대한 연구 및 보고활동을 한

다. 주로 국제회계기준위원회(Th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 IASC)에 의해 제안된 국제회계기준을 연구하고 IASC의 이사회 회원인 ICC(The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Financial Analysts' Associations)에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증권분석사협회는 국제적인 활동도 중시하여 ASAF(The Asian Securities' Analysts Federation)와 AIMR의 연차총회 및 2년마다 개최되는 EFFAS(The European Federation of Financial Analysts Societies) 총회에 대표단을 파견하고 있으며, ICC의 회원으로 ICC 총회에도 정기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3. 호주의 증권분석사제도 3)

가. 증권분석사협회 연혁

호주증권분석사협회의 역사는 1966년에 New South Wales 주에서 설립된 증권거래소협회(Securities Exchange Institute)로부터 시작된다. 증권거래소협회는 설립 후 그 명칭을 호주증권분석사협회(Securities Institute of Australia)로 바꾸었다. 이후에 Queensland, Victoria, South Australia, Western Australia 등에 협회의 지회가 설립되어 전국적인 조직으로 확대되었다. 1975년에 호주증권분석사협회는 호주증권분석사연합회(Australian Society of Security Analysts)를 합병하였다.

1995년 1월에 호주증권분석사협회는 기능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호주증권분석사협회(Securities Institute of Australia)와 증권교육협회(Securities Institute Education)로 분리되었다. 호주증권분석사협회는 회원관리 등 협회업무를 중점적으로 담당하고 증권교육협회는 증권산업에 필요한 최신의 실무교육업무와 증권분석사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과정 및 자격시험을 주관하고 있다.

호주증권분석사협회는 New South Wales, Victoria, Queensland, South Australia, Western Australia 등 5개 지회와 13명으로 구성된 전국위원회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전국위원회는 협회 운영과 관련된 기본 정책 등을 결정하며, 전국위원회의 위원은 각 지회에서 선출된다.

3) 본 장의 내용은 주로 ASAC(1995)를 참고로 하였다.

나. 교육과정 및 증권분석사 자격 취득

증권교육협회가 주관하는 교육과정은 증권산업에 종사하는 실무자에게 실무지식을 교육하는 과정과 과정수료시 일정한 자격을 부여하는 과정으로 구분된다. 실무교육과정은 재무, 재무운용, 펀드운용, 재무기획 및 주식 브로커, 은행 및 기업재무 등을 중심으로 주요 과목별로 구성되어 있다. 자격부여과정은 자본시장인증과정(Certificate in Financial Markets)과 재무관리 및 투자론 석사자격과정(Graduate Diploma in Applied Finance and Investment)으로 나누어진다.

증권교육협회의 교육은 증권시장에서 응용할 수 있는 실무교육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으며, 각 과정의 교육내용은 협회의 교육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실무에서 근무하는 전문가가 준비하고 있다. 자본시장인증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증권분석사협회의 준회원 자격이 부여되고, 재무관리 및 투자론 석사자격과정 이수시에는 증권분석사협회의 정회원 자격이 부여된다. 각 교육과정은 5년 이내에 수료하여야 하며, 이수에 소요되는 기간은 통상적으로 3년이다.

자격부여 교육과정의 평가방법은 과제물과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과정의 수료를 위해서는 핵심과목 4개와 선택과목 4개를 이수하여야 한다. 핵심과목은 자본시장인증과정과 재무관리 및 투자론 석사자격과정에 공통된 과목으로 증권산업, 증권관련법, 경제영향, 투자분석 등 4개 과목이다. 이들 핵심과목은 증권산업, 증권관련법규, 경제학관련 지식, 증권투자분석 등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을 포함하고 있다. 자본시장인증과정의 선택과목은 증권시장, 선물시장, 채권 및 화폐시장, 외환시장 기초 등이고, 재무관리 및 투자론 석사자격과정의 선택과목은 기업재무 응용, 포트폴리오관리 응용, 선물거래, 옵션시장 및 거래, 자산투자 및 분석, 기업인수합병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강자는 각 교육과정에서 수강자의 편의에 따라 전과목 또는 일부 과목만을 선택하여 과목별로 이수할 수도 있다. 1994년에 자본시장인증과정에 등록한 수강자는 4,213명이고, 석사자격과정에 등록한 수강자는 6,615명이었다. 그리고 1994년에는 1,149명의 수강자가 자본시장인증과정 또는 석사자격과정을 이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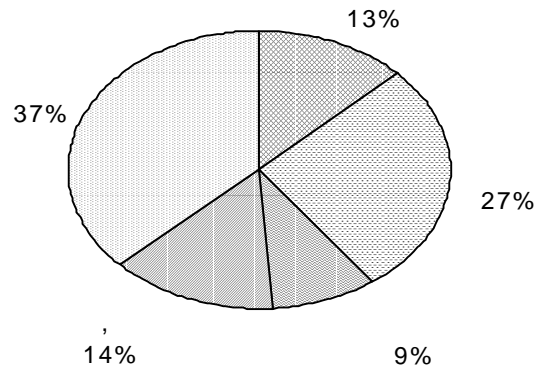
다. 회원의 종류 및 현황

호주증권분석사협회의 회원은 정회원(Associates-ASIA), 준회원(Affiliates-SIA(AFF)), 특별회원(Fellows-FSIA), 그리고 종신회원(Life Members-FSIA)으로 구분된다. 정회원은 재무관리 및 투자론 석사자격과정 수료후 5년 이내에 정회원 가입을 신청한 자에게 자격이 부여된다. 준회원은 자본시장인증과정 수료자 또는 증권분석사협회가 인정하는 대학의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준회원 가입을 신청한 자에게 자격이 부여된다. 특별회원은 증권산업이나 증권분석사협회에 기여한 공이 큰 정회원 중에서 선발되고, 종신회원은 특별회원 중에서 증권관련분야에 기여한 공이 탁월한 자가 선발된다.

1995년 3월 현재 종신회원은 7명, 특별회원은 222명, 정회원은 3,998명, 준회원은 2,387명으로 증권분석사협회의 회원 수는 6,614명이다. 증권분석사협회의 회원은 회원가입 시에 입회비 50달러와 매년 회비 165달러를 납부하여야 한다.

증권분석사협회에 가입한 증권분석사는 주로 증권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증권분석사가 종사하는 업종의 비율은 은행 12.8%, 증권업 27.2%, 투자기획 및 투자자문업 9.0%, 회계업 8.2%, 보험업 5.8% 등이다.

<그림 II-3> 호주증권분석사회 회원구성



4. 우리 나라의 증권분석사제도 4)

가. 증권분석사제도 현황

성공적인 경제성장정책에 힘입어 우리 나라 증권시장은 1970년대에 급속도로 성장하였으며, 국민들의 증권투자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증권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과학적인 증권투자를 위한 증권전문인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증권산업에서는 이미 증권전문인력으로서 증권분석사 제도가 활발히 운용되고 있어 우리 나라도 1970년대 중반에 증권분석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증권분석사제도가 정착되기도 전에 증권분석사 관련 협회가 난립하고 이들에 의해 증권분석사가 양산됨에 따라 자격제도의 적합성에 대한 논란이 도입 초기부터 제기되었다. 또한 증권시장에서도 기관투자자에 비해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높아 증권분석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고, 공인회계사 등과 같은 자격제도에 비해 사회적 인지도가 낮다는 점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1990년대에 자본시장이 개방되고 증권산업의 선진화가 진척됨에 따라 증권전문인력으로서 증권분석사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다. 특히 자본시장의 개방에 따라 외국투자자들은 국내기업에 관한 신뢰도가 높은 정보분석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신뢰성 높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자들이 인정할 수 있는 증권전문인력으로서 증권분석사의 육성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기존

4) 본 장의 내용은 주로 양경철(1985), 한국증권경제연구원(1992), 황수성(1992) 등을 참고로 하였다.

증권분석사 자격의 적합성에 대한 논란과 증권분석사회의 활동부족 등으로 인하여 우리 나라 증권분석사 제도는 증권산업에서 전문인력으로 서의 위치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증권분석사 제도는 1976년 3월에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증권분석반 수료자 51명이 설립한 한국증권분석사협회를 효시로 한다. 그 다음해인 1977년 3월에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증권분석반 수료자 36명이 전국증권분석사협회를 설립하였고, 대한증권업협회 부설 한국증권연수원의 증권분석반 수료자 15명이 대한증권분석사회를 설립하였다. 이렇듯 증권분석사 관련 단체가 초창기에 개별적인 3개 기관으로 설립되어 업무에 혼란이 있었다.

이후 개별적으로 설립된 증권분석사 단체를 단일화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1978년 3월에 한국증권분석사협회와 전국증권분석사협회가 통합하여 한국증권분석사회를 설립하였고, 동 협회는 1979년 4월에 제 1회 증권분석사 자격시험을 실시하였다. 1980년 9월에는 한국증권분석사회가 대한증권분석사회를 흡수함으로써 증권분석사 관련 단체는 단일 기관으로 통합되었다. 한국증권분석사회는 1983년에 재무부에 사단 법인으로 등록하였다.

현재 한국증권분석사회는 매해 실시되는 증권분석사 시험을 주관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를 대표하여 외국 및 국제적인 증권분석사 관련단체와의 교류를 주요 활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적인 기반이 빈약하여 증권분석사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교육이나 홍보활동에서는 큰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나. 증권분석사 시험제도 현황

증권분석사의 자격은 한국증권분석사회가 주관하여 매년 실시되는 증권분석사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부여되고 있다. 증권분석사 자격시험은 6개 과목으로 과목당 시험시간은 50분이다. 시험과목은 증권투자론, 회계학, 증권관계법, 경영학, 경제학의 5개 필수과목과 1개 선택과목이다. 선택과목은 상법과 세법으로 이 중에서 1개 과목을 선택하면 된다.

시험합격률은 1985년에 73.1%로 매우 높았으나, 그 이후에는 20~30%로 저하되었다. 지난 5년간의 합격률은 1,672명의 지원자 중에서 182명이 합격하여 10.9%이었다. 이렇듯 합격률이 저하된 것은 1980년대 하반기 이후 증권분석사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면서 시험문제가 종전에 비해 어렵게 출제되었으나 자격시험에 대비한 교육과정이 미비한 사실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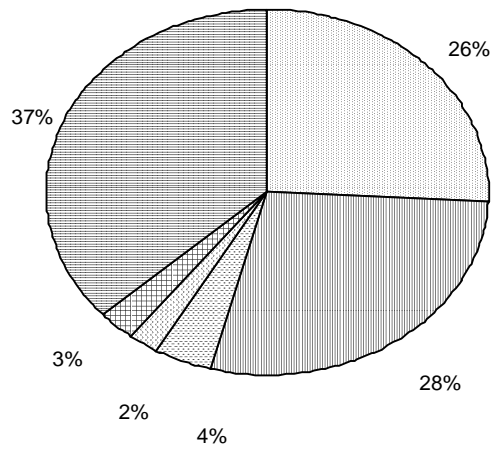
증권분석사회의 회원은 개인회원, 법인회원, 그리고 명예회원으로 구분되나, 현재는 개인회원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5년 4월말 현재 회원 수는 1,042명이다. 개인회원은 한국증권분석사회가 주관하는 증권분석사 시험에 합격한 후 개인회원으로 등록하면 된다.

회원 구성을 직업별로 분석해 보면 증권회사에 근무하는 자가 268명, 투자신탁회사에 근무하는 자가 295명으로 양 기관에 근무하는 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은행원이 45명, 단기금융회사 근무자가 23명, 보험회사 근무자가 28명, 기타가 383명에 달하고 있다.

<표 II-4> 시험합격률 현황

| 연 도 | 지원자(명) | 합격자(명) | 합격률(%) |
|------|--------|--------|--------|
| 1985 | 52 | 38 | 73.1 |
| 1986 | 112 | 47 | 42.0 |
| 1987 | 277 | 68 | 24.5 |
| 1988 | 138 | 36 | 26.1 |
| 1989 | 113 | 34 | 30.1 |
| 1990 | 281 | 63 | 22.4 |
| 1991 | 239 | 83 | 34.7 |
| 1992 | 180 | 45 | 25.0 |
| 1993 | 378 | 39 | 10.3 |
| 1994 | 663 | 34 | 5.1 |
| 1995 | 222 | 57 | 25.7 |
| 1996 | 195 | 22 | 11.2 |
| 1997 | 214 | 30 | 14.0 |

<그림 II-4> 증권분석사회 회원 구성



Ⅲ. 증권분석사제도 개선방안

1. 증권분석사제도의 개선 필요성
2. 현행 증권분석사제도의 문제점
3. 증권분석사제도 개선방안

Ⅲ. 증권분석사제도 개선방안

1. 증권분석사제도의 개선 필요성

증권시장의 정보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상장기업에 관한 정보의 양과 질, 정보유통경로와 전달된 정보의 가공방법 등을 정비해야 한다. 즉, 증권시장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회사정보의 공시체계를 개선하여 정보의 투명성과 양을 증대시키고, 회계감사인의 역할을 강화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그리고 증권시장에 전달되는 정보를 보다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증권전문인력을 육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증권전문인력의 필요성에 부응하여 증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함께 실무능력과 전문직업인으로서 철저한 윤리의식 등을 고루 갖춘 증권분석사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파생금융상품 시장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복잡다기화된 자본시장에서 다양한 투자목적에 갖는 투자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정보분석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으로서 증권분석사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Dimson과 Marsh의 연구(1984)에 의하면 증권분석사의 전문적인 분석능력은 증권시장에서 가치를 생산하고 있다. 즉, 투자분석기술의 향상에 따라 증권시장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증권시장의 효율성이 증가함에 따라 주가가 주식의 본질적인 가치에 보다 신속하게 접근하므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은 보다 빠르게 적정 수준에서 결정된다.

또한 자본시장의 개방과 증권거래의 국제화에 따라 선진국 수준에 맞는 증권분석사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투자자가 우리 나라 증권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투자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기업분석자료를 제공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기업분석자료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회계제도의 정비가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이지만 공표된 기업정보를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할 수 있는 전문인력도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에는 증권시장의 발달에 따라 요구되는 기업정보분석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1960년대에 기존의 증권분석사 제도를 개선하여 공인증권분석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일본의 경우에도 자본시장 개방에 따라 1980년도에 검정회원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선진국 수준의 증권분석사제도로 전환하였다.

우리 나라도 1992년부터 증권시장이 외국인투자자에게 개방되어 외국인투자자가 국내 증권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증권시장의 선진화가 이루어지면 기업분석이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주가가 적정 수준에서 결정된다. 더욱이, 과학적인 분석방법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외국인투자자들은 신뢰할 수 있는 증권분석사가 분석한 정보를 절실히 요구하므로, 증권분석사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킨다면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증권시장 참여를 촉진하여 증권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현행 증권분석사 제도의 문제점

우리 나라 증권분석사 제도의 문제점은 증권분석사 시험제도, 교육제도, 증권분석사에 대한 대우, 회원제도 등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증권분석사를 증권분석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의 자격요건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증권분석사 시험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현행 증권분석사 시험제도와 교육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증권분석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격시험제도의 적정성 결여, 증권분석사 선발을 위한 사전교육의 미비, 그리고 증권분석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의 미비 등이 문제가 된다. 현행 제도에서 증권분석사의 자격은 한국증권분석사회가 매년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부여되고 있다. 즉, 자격시험의 관리와 자격부여는 한국증권분석사회가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자격시험의 관리와 문제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결여되어 증권분석사 자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증권전문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격시험인 증권분석사 시험의 문제 출제와 관리를 증권분석사협회가 담당하여 시험수준의 적정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재정과 조직이 빈약한 증권분석사회가 이러한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증권분석사의 자격요건으로 실무경력을 요구하지 않아 외국의 증권분석사에 비해 실무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분석능력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이 결여되어 있다. 증권분석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미국은 3단계, 일본은 2단계의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갖추어야 하나, 우리 나라에서는 매년 1회 실시되는 시험에 합격하면 증권분석사의 자격이 부여된다.

따라서 미국이나 일본의 증권분석사에 비해 우리 나라에서는 증권 분석사 자격을 취득하기가 용이하며, 증권분석사가 대외적으로 공신력 있는 자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즉,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증권 전문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의 요건이 미흡하여 객관적인 면에서 대외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세계적으로 자본시장은 최근에 와서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증권분석의 기법과 증권이론은 자본시장의 세계화와 증권화 추세에 따라 변화의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증권분석사에 대한 보수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어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세미나 등 보수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 등에서는 증권분석사가 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보수교육에 일정기간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는 증권분석사의 자격요건이 부과되고 있으나,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이러한 교육제도조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증권분석사 제도개선방안

가. 시험제도 개선

1) 증권분석사 시험제도 개선연구회

자본시장의 개방추세에 발맞추어 미국이나 일본의 증권분석사와 견줄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증권분석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증권분석사 시험제도를 개선하여야 하며, 증권분석사가 증권업계에서 증권전문인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증권업계의 필요에 따라 증권전문인으로서 증권분석사제도가 자발적으로 도입되고 발전되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자본시장의 발전과 대외개방에 따라 세계적인 수준의 증권전문인으로서 증권분석사를 육성시킬 필요성을 인식하여 정책당국의 주도하에 검정회원 제도를 도입하였다.

증권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증권전문인의 육성을 위한 제도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증권업계에서 자발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자본시장의 역사가 일천하고 급속도로 자본시장이 국제화되는 현실에서 증권분석사제도의 자발적인 발전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를 참조하여 우리나라도 증권분석사 제도를 정책적인 측면에서 지원하여 증권업계 모두가 참여하는 형태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적절한 방법으로 생각된다.

증권분석사 자격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험과목과 시험문제의 적합성과 엄격한 시험관리가 필요하다. 시험과목과 시

험문제의 적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미국에서는 공인증권분석사협회가 지속적으로 시험문제를 관리하고 시험에 대비한 학습교재를 개발하는데 힘쓰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일본증권경제연구원을 중심으로 증권분석사를 위한 「시험제도개선 연구회」가 구성되어 있다. 시험제도개선 연구회에서는 증권분석사 시험준비를 위한 학습교재의 개발과 시험문제의 출제 그리고 시험제도의 개선방안 등을 연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1년에 한번 시험이 시행될 때마다 시험문제가 개별적으로 작성되어 시험문제의 적합성과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증권분석사 시험을 위한 학습교재의 개발과 시험문제의 지속적인 개발과 관리를 담당할 기구로서 「증권분석사 시험제도개선 연구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증권분석사 시험제도개선 연구회는 한국증권연구원을 중심으로 한국증권분석사회와 한국증권연수원 그리고 학계 및 업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형태가 바람직할 것이다.

「증권분석사 시험제도개선 연구회」는 잠정적인 기구로서 증권분석사 자격시험의 과목을 결정하고 시험문제의 관리와 학습교재의 개발을 담당한다. 그리고 시험제도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국증권분석사회가 객관적인 역량을 갖출 때까지는 증권분석사 시험제도개선 연구회가 증권분석사 시험과 학습교재의 개발을 주관하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실무적인 작업은 한국증권연수원이 담당하도록 한다.

2) 시험제도 개선안

증권분석사 시험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제도에 의해 자격을 취득한 증권분석사에 대한 처우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에도 1960년대에 증권분석사제도를 개선할 때 기존회원에 대한 처

우가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다. 기존회원의 기득권을 인정하면서도 증권분석사의 자질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회원의 자격을 그대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미국에서도 제도개선시 많은 논의가 있었다. 신제도 도입시 기존회원의 자격을 그대로 인정하는 방안은 기존회원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지만, 증권분석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도를 개선한다는 취지에는 전적으로 배치된다. 그렇지만 기존회원의 기득권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것은 기존회원과 기존조직의 협조를 받을 수 없으므로 새로운 제도의 시행 초기에 많은 반대에 직면하여 실질적으로 제도 도입이 어렵게 된다.

국내외적으로 우리 나라 증권분석사의 이익을 대표하는 단체로 이미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한국증권분석사회가 있으므로 이들을 무시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개선된 제도의 시행 초기부터 극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따라서 기존회원의 기득권을 일부 인정하면서 자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증권분석사 시험제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1단계 시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미국은 3단계 시험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일본은 2단계 시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증권분석사의 학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실무경험도 시험에 반영하기 위하여 현행 1단계 시험제도를 2단계 또는 3단계 시험제도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세계적으로 증권분석사제도를 선도해 가고 있는 미국식 3단계 시험제도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국내 여건 등을 감안하여 학문적인 지식에 중점을 둔 1차 시험과 실무지식에 초점을 둔 2차 시험으로 구성된 2단계 시험제도도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증권분석사 시험제도 개선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이 3가지 방안을 고

려할 수 있으나 시험제도와 시험과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험제도 개선연구회에서 추후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제 1안은 2단계(1차 및 2차) 시험을 실시하되, 기존 증권분석사는 준회원으로 자격을 인정하고 일정기간 내에는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제 2안은 3단계(1차, 2차, 3차) 시험을 실시하되 기존 증권분석사는 준회원으로 자격을 인정하고, 일정기간 내에는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제 3안은 3단계 시험을 실시하되, 기존 증권분석사는 준회원으로 자격을 인정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1차 시험 또는 1차 시험 및 2차 시험을 면제한다.

3가지 방안 중에서 미국과 일본의 제도와 우리 나라 실정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는 3단계 시험을 실시하는 방안이 바람직하지만 현재로서는 2단계 시험을 실시하는 제 1안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판단된다. 각 방안을 정리한 것이 <표 III-1>이고, 각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III-1> 증권분석사 시험제도 개선방안

| | 제1안 | 제2안 | 제3안 |
|-----------------|----------------------|--|--|
| 시험제도 | 2단계 시험 | 3단계 시험 | 3단계 시험 |
| 자격요건 | - 연수과정 or 통신과정 이수 | - 연수과정 or 통신과정 이수 - 3차 시험: 3년 이상 근무경력 | - 연수과정 or 통신과정 이수 - 3차 시험: 3년 이상 근무경력 |
| 기존분석사에 대한 혜택 | - 1차 시험 면제(5년간) | - 1차 시험 면제(5년간) | - 1차 시험 면제(5년간) - 35세 이상: 1, 2차 시험 면제(5년간) |

가) 제 1안 : 2단계 시험 실시

(1) 시험제도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겸비한 증권분석사를 선발하기 위해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실시한다. 1차 시험은 증권분석에 필요한 기본적인 이론과 지식의 측정에 중점을 두고, 2차 시험은 실무응용능력의 측정과 직업윤리교육에 중점을 둔다.

(2) 응시자격요건

1차 시험 또는 2차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사전교육과정으로 각각 한국증권연수원이 주관하는 증권분석사 연수과정이나 통신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학사학위 소지자는 1차 시험의 사전교육과정을 면제받을 수 있다. 2차 시험 응시자는 1차 시험을 합격하거나 면제받은 자로서 증권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3) 기존 증권분석사에 대한 특혜

기존 증권분석사는 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1차 시험의 면제기간은 새로운 시험제도가 시행된 해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나) 제 2안 : 3단계 시험 실시

(1) 시험제도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을 겸비한 증권분석사를 선발하기 위해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을 실시한다. 1차 시험은 증권분석에 필요한 기본적인 이론 및 지식을 측정하고, 2차 시험은 실무응용능력의 측정에 중점을 두고 직업윤리과목을 포함한다. 3차 시험은 실무응용능력의 측정과 포트폴리오 관리 등에 중점을 두고 직업윤리과목을 포함한다.

(2) 응시자격 요건

1차 시험, 2차 시험, 또는 3차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각각 사전교육과정으로 한국증권연수원이 주관하는 증권분석사 연수과정이나 통신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학사학위 소지자는 1차 시험의 사전교육과정을 면제받을 수 있다. 3차 시험 응시자는 증권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3) 기존 증권분석사에 대한 특혜

기존 증권분석사는 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1차 시험의 면제기간은 새로운 시험제도가 시행된 해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다) 제 3안 : 3단계 시험 실시

제 3안의 시험제도와 응시자격요건은 제 2안과 동일하다. 다만, 기존 증권분석사에 대한 특혜로서 기존의 증권분석사는 1차 시험을 면제하고,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해에 나이가 35세 이상인 경우에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면제한다. 1차 시험 또는 2차 시험의 면제기간은 새로운 시험제도가 시행된 해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3) 시험과목

증권분석사 자격시험의 과목은 원칙적으로 증권분석사 시험제도 개선연구회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외국의 시험과목을 참고하여 기본적인 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시험과목은 2단계 또는 3단계 시험제도의 채택에 따라 달라야 한다.

2단계 시험제도를 채택하는 경우에는 1차 시험에서 증권에 관한 기본적인 이론과 지식을 측정하고, 2차 시험에서 증권관련 이론과 실무응용능력을 측정하도록 한다. 1차 시험은 경제학, 회계 및 재무분석, 증권분석, 증권투자론, 증권관련법, 증권통계 등을 시험과목으로 하여 이에 관한 지식을 시험한다. 2차 시험은 직업윤리, 재무제표분석, 주식 및 채권분석, 산업 및 기업분석, 국제증권학, 포트폴리오 관리 등을 시험과목으로 하여 이에 관한 이론과 실무응용능력을 시험한다(<표 Ⅲ-2> 참조).

<표 III-2> 2단계 시험제도의 시험과목

| | 1차 시험 | 2차 시험 |
|------|--|--|
| 중점사항 | 기본적 이론과 지식의 측정 | 증권관련이론과 실무응용능력의 측정 |
| 시험과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학 - 회계 및 재무분석 - 증권분석 - 증권투자론 - 증권관련법 - 증권통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윤리 - 재무제표분석 - 주식 및 채권 분석 - 산업 및 기업분석 - 국제증권학 - 포트폴리오 관리 |

3단계 시험제도에서는 1차 시험에서 증권에 관한 기본적인 이론과 지식을 측정하고, 2차 시험에서 실무응용능력을 측정하며, 3차 시험에서 실무응용능력과 포트폴리오 관리능력을 측정하도록 한다. 1차 시험은 경제학, 회계 및 재무분석, 증권분석, 증권투자론, 증권관련법, 증권통계 등에 관한 이론과 지식을 측정한다. 2차 시험은 직업윤리, 재무제표분석, 주식 및 채권 분석, 산업 및 기업분석, 국제증권학, 증권투자론 등을 시험과목으로 하여 증권에 관한 실무응용능력을 측정한다. 3차 시험은 직업윤리, 포트폴리오분석 및 성과분석, 포트폴리오 사례연구 응용, 국제증권학, 증권분석, 회계 및 재무분석 등 실무응용능력과 포트폴리오 관리능력을 측정한다(<표 III-3> 참조).

<표 III-3> 3단계 시험제도의 시험과목

| | 1차 시험 | 2차 시험 | 3차 시험 |
|-------|--|---|---|
| 중점 사항 | 기본적 이론과 지식의 측정 | 실무응용능력의 측정 | 실무응용능력과 포트폴리오 관리의 측정 |
| 시험 과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학 - 회계 및 재무분석 - 증권분석 - 증권투자론 - 증권관련법 - 증권통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윤리 - 재무제표분석 - 주식 및 채권 분석 - 산업 및 기업분석 - 국제증권학 - 증권투자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윤리 - 포트폴리오분석 및 성과분석 - 포트폴리오 사례연구 응용 - 국제증권학 - 증권분석 - 회계 및 재무분석 |

나. 증권분석사 교육제도 개선

증권분석사는 증권업계에서 증권분석이나 포트폴리오 관리 부분에서 일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으로서 학문적인 지식과 함께 실무응용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증권관련 이론은 하루가 새롭게 변하고 있으며, 전산기술의 발달로 실무에서 필요한 지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증권분석사는 자격취득을 위한 학문적인 지식의 함양도 중요하지만 변화하는 최근 정보를 지속적으로 습득할 필요성이 있다.

증권분석사와 관련된 교육은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교육과 증권분석사에 대한 보수교육으로 나누어진다.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은 원칙적으로 한국증권연수원으로 정하고, 한국증권연수원의 시설을 활용하도록 한다. 한국증권연수원은 시험제도 개선 연구회와

협조하여 증권분석사 시험 단계별로 연수과정과 통신교육과정을 개설하도록 한다. 통신교육과정은 지방소재 응시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개설되어야 한다.

증권분석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위해서 증권분석사회는 정기적으로 간행물을 발간하고 매해마다 정기적으로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증권분석사가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지식과 선진금융기법을 습득하도록 한다. 이러한 보수교육 프로그램은 시험제도 개선 연구회와 한국증권연수원이 공동으로 개발하도록 한다. 증권분석사에 대한 보수교육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일정기간(예: 2년) 이상 보수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증권분석사의 자격을 정지시키는 등의 규제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다. 증권분석사에 대한 대우 개선

선진국 수준의 증권분석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증권분석사 자격시험 제도와 교육제도를 강화하여 증권전문인으로서 자격을 갖추게 함과 동시에 증권업계에서 증권분석사 자격 취득자에게 고용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일본에서는 증권업계에 종사하는 자가 검정회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승진이나 급여 등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고 있다.⁵⁾ 따라서 우리 나라도 증권업계가 솔선 수범하여 증권전문인으로서 증권

5) 일본증권분석사협회에 따르면 증권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과장이나 부장 승진시 검정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검정회원에 비해 약 5년 늦게 승진시키고 있다.

분석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증권분석사 자격소지자를 체계적으로 우대할 필요가 있다.

증권분석 관련 전문인으로서 증권분석사를 인정하는 제도적인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증권분석사 자격소지자에 대한 금전적인 혜택과 함께 증권분석이나 투자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자격요건으로서 증권분석사 자격 유지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된 증권분석사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증권업계에서 일반투자자를 위하여 투자상담을 하는 자에게 투자상담사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증권관련 업계에서 증권분석업무나 포트폴리오 또는 펀드운용에 종사하는 자의 자격요건으로 증권분석사 자격소지를 요건화할 필요가 있다.

라. 증권분석사 회원제도 개선

한국증권분석사회가 증권분석사를 위한 단체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회원제도가 확립되고 재정적인 기반이 충실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공인증권분석사협회의 설립 초기에 증권분석사연합회에서 재정지원을 하였고,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증권업협회를 중심으로 증권관련 기관이 재정적인 뒷받침을 하였다. 현재 한국증권분석사회의 재정은 개인회원의 회비와 시험관련 수입 등에 의존하여 재정기반이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한국증권분석사회가 우리 나라 증권시장의 국제적인 위상에 맞는 대내외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회원제도를 개선하여 한국증권분석사회의 재정기반을 충실화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새로운 자격시험제도가 도입되는 경우에 회원제도는 정회원, 준회원, 그리고 법인회원으로 변경한다. 정회원은 새로 시행되는 증권분석사 최종시험에 합격하고 증권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한국증권분석사회에 등록된 자로 한다. 준회원은 현행 증권분석사 자격을 소지하거나 증권분석사 1차 시험에 합격하고 한국증권분석사회에 등록된 자로 한다. 재정기반의 확립을 위해서는 증권관련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증권관련 기관 또는 한국증권분석사회를 지원하고자 하는 기관을 법인회원으로 한다.

한국증권분석사회의 재정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엄격하게 징수하며 교육이나 시험 등과 관련된 수입의 일부를 한국증권분석사회의 수입으로 한다. 특히 초기에 재정기반을 조속히 확립하기 위해서는 법인회원으로부터 특별회비를 징수하도록 한다. 그리고 매해 법인회원, 정회원, 준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한다. 또한 시험응시를 위한 사전교육에서 얻는 수입과 증권분석사 자격시험 응시료 수입과 증권분석사에 대한 보수교육에서 나오는 수입과 학습교재 판매 수입 등의 일정 부분을 한국증권분석사회에 배정함으로써 항구적인 수입원을 확보하도록 한다.

한국증권분석사회의 운영은 새로운 증권분석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정회원에 의한 것이 원칙이지만 자격시험에 합격한 정회원이 충분히 확보되기 이전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하여금 한국증권분석사회를 운영하도록 한다. 따라서 기존의 증권분석사 자격을 소지한 준회원이 일정기간 동안 한국증권분석사회를 운영하도록 하며, 향후에도 한국증권분석사회의 임원의 자격은 정회원으로 제한하지 아니한다.

IV. 증권전문인력제도

1. 미국의 증권전문인력제도
2. 일본의 증권전문인력제도
3. 우리 나라의 증권전문인력제도

IV. 증권전문인력제도

1. 미국의 증권전문인력제도 6)

가. 현황

미국은 증권산업에서 공익과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증권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격요건을 세분화된 업무별로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 증권업무를 세분하고 해당업무별로 자격시험을 실시하여, 증권산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된 최소한의 학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증권전문인력에 대한 자격제도는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대리인과 대리인의 업무수행을 감독하는 관리자의 이중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미국증권업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Securities Dealers, Inc.: NASD)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증권회사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직원을 일정수 이상 고용하도록 하여 증권전문인력제도가 정착되어 있다. 즉, 미국에서 증권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증권회사도 소정의 자격을 갖춘 일정 수 이상의 전문인력을 고용하여야 한다.

6) 전문직업인력에 대한 윤리기준, 행위기준, 교육의 필요성 등에 관한 논의는 Bishop(1987), Anderson(1985), Anderson과 Ellyson(1986), Rogow (1990) 등이 있다. 그리고 증권시장과 같은 투기적인 시장에서 전문가의 역할에 관한 연구로는 Holland와 Horton(1993), Denton(1985), Mear와 Firth(1990) 등이 있다.

미국증권업협회에 신규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증권회사는 기본적으로 증권업무를 총괄하는 2명 이상의 등록관리자(Registered Principal)를 고용하여야 한다. 증권회사에서 전반적으로 업무를 총괄하는 임원은 등록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등록관리자는 증권회사의 업무에 따라 일반증권관리자(General Securities Principal), 투자회사 및 변액계약상품 제한관리자(Limited Principal-Investment Company and Variable Contracts Products), 직접참여 프로그램 제한관리자(Limited Principal-Direct Participation Program) 등이 있다.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자 외에도 증권회사는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에 따라 재무 및 운영 제한관리자(Limited Principal-Financial and Operations), 브로커와 딜러 재무운영소개 제한관리자(Limited Principal-Introducing Broker/Dealer Financial and Operations), 등록옵션관리자(Registered Options Principal) 등 해당업무별로 1명 이상의 등록관리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미국증권업협회의 회원사에서 증권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담당업무별로 미국증권업협회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종업원이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미국증권업협회가 주관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자격시험에 합격한 종업원은 미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증권회사는 종업원을 미국증권업협회에 등록시키기 이전에 자기 책임하에 종업원의 명성, 업무평판, 자격 및 경험 등을 조사·확인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증권회사는 기업정보문의시스템(Firm Access Query System: FAQS) 등을 이용하여 종업원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고 있다.

증권회사의 종업원은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따라 관리직, 영업직,

그리고 영업보조직으로 구분되며, 담당업무에 따라 각각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미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관리직은 등록관리자(Registered Principals: RP)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영업직원은 등록대리인(Registered Representative: RR)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그리고 영업직원의 업무를 돕는 직원은 보조대리인(Assistant Representative-Order Processing)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나. 증권전문인력의 업무와 자격요건

1) 등록관리자(Registered Principal)

미국에서 증권업에 종사하는 회사로서 미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등록관리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미국증권업협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증권회사는 단독경영자 또는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 2명 이상의 등록관리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또한 증권회사의 업무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옵션 등에 관한 등록관리자를 1인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미국증권업협회 회원인 증권회사에서 관리자(Principal)로서 증권업무(investment banking and securities business)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담당하는 업무별로 정해진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미국증권업협회에 관리자로서 등록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증권회사의 관리자로서 근무하더라도 증권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는 관리자로서 등록할 필요가 없다.

등록관리자는 증권회사의 경영이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핵심직원
으로 증권회사의 증권업무분야에서 투자권유, 감독, 영업, 또는 교육 훈
련 등을 담당한다. 단독경영자(Sole Proprietor), 간부직원(Officer), 동
업자(Partner), 지점장, 임원 등은 등록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증권회사의 등록관리자는 항상 해당업무와 관련된 등록관리자
(Registered Principal)의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만약, 등록관리자의
자격이 취소되었거나 관리자 등록이 종료된 지 2년 이상이 경과한 경
우에는 자격시험에 다시 합격하여야 한다.

증권회사의 등록대리인(Registered Representative)이 승진 등으로
인하여 등록관리자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된 등록관
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업무담당 후 최초
90일 동안은 해당자격을 보유하지 못하였어도 등록관리자 업무를 취급
할 수 있다. 그러나 90일 이내에 해당된 등록관리자 자격시험에 합격
하지 못하면 이후에는 등록관리자 업무 취급이 금지된다.

등록대리인 자격이 없는 자가 등록관리자의 업무를 취급하게 된 경
우에는 등록관리자 자격을 취득하여야만 관련된 등록관리자 업무를 취
급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자격이 없는 관리자는 자격시험 신청서류를
제출한 후 90일 이내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가) 일반증권관리자(General Securities Principal)

일반증권관리자는 증권회사에서 증권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자로서
자격시험(Test Series 24)에 합격하고 미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하여야 한
다. 그러나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범위가 제한된 자는 관련업무별 관리
자로서 등록하여야 하지만, 일반증권관리자의 자격을 갖추고 일반증권

관리자로 등록할 수도 있다.

일반증권관리자는 증권회사에서 증권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관리자 자격 외에 대리인 자격도 갖추어야 한다. 즉, 일반증권관리자는 규정에 따라 등록 이전에 일반증권대리인(General Securities Representative) 또는 기업증권제한대리인(Limited Representative-Corporate Securities)의 자격도 갖추고 이에 따른 등록도 하여야 한다.

기업증권제한대리인의 자격을 갖춘 자가 변액계약상품(Variable Contracts Products) 또는 직접참여프로그램(Direct Participation Program)을 총괄하는 일반증권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회사 및 변액계약상품 제한대리인(Limited Representative-Investment Company and Variable Contracts Products) 또는 직접참여프로그램 제한대리인(Limited Representative-Direct Participation Program)으로도 등록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록관리자로서 등록이 종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일반증권관리자 또는 재무관리자(Financial Principal)는 자격시험에 응시할 필요가 없으며 일반증권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일반증권관리자는 등록옵션관리자(Registered Options Principal), 재무 및 운영 제한관리자(Limited Principal-Financial and Operations), 일반증권판매감독 제한관리자(Limited Principal-General Securities Sales Supervisor), 지방채관리자(Municipal Securities Principal), 브로커와 딜러 재무운영소개 제한관리자(Limited Principal-Introducing Broker/Dealer Financial and Operations) 등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각각 별도로 해당업무별로 정해진 관리자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나) 재무 및 운영 제한관리자(Limited Principal-Financial and Operations)

재무 및 운영 제한관리자는 자격시험(Test Series 27)에 합격하고 미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증권회사의 수석 재무임원(Chief Financial Officer)은 재무 및 운영 제한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재무 및 운영 제한관리자가 담당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증권회사가 증권감독기관에 제출하는 재무보고서의 정확성에 대한 최종 승인과 책임
- ② 상기 재무보고서의 최종 준비
- ③ 재무보고서 작성보조자에 대한 감독
- ④ 회사의 장부기록 유지 관리자에 대한 감독 및 책임
- ⑤ 관련법규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모든 재무관련 책임규정에 의한 책임을 회사가 준수하는 지에 대한 감독 및 집행
- ⑥ 후선부서업무의 관리 및 유지를 담당하는 자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 및 책임
- ⑦ 기타 회사의 재무 및 영업관리와 관련된 업무(브로커/딜러 및 시장조성자의 자전업무 감독 등)

다) 브로커와 딜러 재무운영소개 제한관리자(Limited Principal-Introducing Broker/Dealer Financial and Operations)

브로커와 딜러 재무운영소개 제한관리자는 고객의 위탁계좌를 갖지 않고 고객의 자금이나 유가증권을 보유하지 않는 증권회사의 재무 및 운영을 담당하는 관리자로서 자격시험(Test Series 28)에 합격하고 미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증권회사의 수석 재무임원(Chief Financial Officer)은 브로커와 딜러 재무운영소개 제한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브로커와 딜러 재무운영소개 제한관리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이 앞에서 설명한 재무 및 운영 제한 관리자의 업무와 동일하다.

- ① 증권회사가 증권감독기관에 제출하는 재무보고서의 정확성에 대한 최종 승인과 책임
- ② 상기 재무보고서의 최종 준비
- ③ 재무보고서 작성보조자에 대한 감독
- ④ 회사의 장부기록 유지 관리자에 대한 감독 및 책임
- ⑤ 관련법규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모든 재무관련 책임규정에 의한 책임을 회사가 준수하는 지에 대한 감독 및 집행
- ⑥ 후선부서 업무의 관리 및 유지를 담당하는 자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 및 책임
- ⑦ 기타 회사의 재무 및 영업관리와 관련된 업무(브로커/딜러 및 시장조성자의 자전업무 감독 등)

라) 투자회사 및 변액계약상품 제한관리자(Limited Principal-Investment Company and Variable Contracts Products)

투자회사 및 변액계약상품 제한관리자의 담당업무는 증권회사에서 투자회사가 발행한 상환부 유가증권(Redeemable Securities), 폐쇄형 Mutual Fund, 변액보험계약 등에 대한 투자권유 및 매입·매출로 제한된다. 투자회사 및 변액계약상품 제한관리자는 소정의 자격시험(Test Series 26)에 합격하고 미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일반증권대리인 또는 투자회사 및 변액계약상품 제한대리인의 자격을 갖고 있어야 한다.

마) 직접참여프로그램 제한관리자(Limited Principal-Direct Participation Program)

증권회사에서 담당업무가 석유 및 가스사업, 목축사업, 콘도사업 등 직접참여프로그램의 지분참여와 부채취급으로 제한된 관리자는 자격시험(Test Series 39)에 합격하고 직접참여프로그램 제한관리자(Limited Principal-Direct Participation Program)로서 미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직접참여프로그램 제한관리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일반증권대리인이나 직접참여프로그램 제한대리인으로도 등록하여야 한다.

바) 등록옵션관리자(Registered Options Principal)

일반투자자와 콜옵션이나 풋옵션을 거래하고자 하는 증권회사는 최소한 1인 이상의 등록옵션관리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또한 증권회사는

Senior Registered Options Principal과 Compliance Registered Options Principal을 지명하고 이를 미국증권업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등록옵션관리자의 업무는 옵션관련 업무로 제한되며, 별도의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증권회사의 타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다.

증권회사에서 매일매일의 옵션거래를 관리하는 등록옵션관리자는 소정의 자격시험(Test Series 4)에 합격하고 옵션관리자로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옵션관리자는 별도로 시행되는 콜옵션과 풋옵션의 자격시험에 모두 합격하여야만 등록옵션관리자로서 등록할 수 있다. 등록옵션관리자는 또한 일반증권대리인 또는 기업증권 제한대리인으로도 등록하여야 한다.

사) 일반증권판매감독 제한관리자(Limited Principal-General Securities Sales Supervisor)

증권회사에서 유가증권의 판매관리(유가증권 판매 및 판매관리 인력의 교육, 장부관리 유지 포함)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일반증권판매감독 제한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지점장 및 매출관련 부서장은 일반적으로 일반증권판매감독 제한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일반증권판매감독 제한관리자는 소정의 자격시험(Test Series 8)에 합격하여야 하며, 일반증권대리인의 자격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일반증권판매감독 제한관리자는 인수업무의 감독, 시장조성 업무의 감독,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한 광고의 최종인가, 고객의 자금이나 유가증권의 보관 감독, 증권회사의 재무책임 규정의 전반적인 준수 감독 등의 업무는 취급할 수 없다.

2) 등록대리인(Registered Representative)

등록대리인은 증권회사를 위하여 감독과 증권영업 및 투자권유 등의 증권업무에 종사하거나 증권회사와 관련된 직원교육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관리자가 아닌 중간관리자(Assistant Officer) 이하의 직원을 지칭한다.

증권회사의 투자은행 업무나 증권업무 분야의 대리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담당업무별로 정해진 대리인으로서 미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대리인은 등록관리자와 마찬가지로 미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하기 이전에 담당하고자 하는 업무별로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또한 등록이 취소되거나 등록된 업무를 떠난 지 2년이 경과된 등록대리인은 시험을 다시 치루어야 한다.

가) 일반증권대리인(General Securities Representative)

증권회사에서 전반적인 증권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일반증권대리인의 자격을 갖추고 미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증권업협회에 일반증권대리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자격시험(Test Series 7)에 합격하여야 한다.

담당업무가 특정분야로 제한된 자는 일반증권대리인의 자격을 유지할 필요가 없으나, 업무가 특정분야로 제한된 자도 일반증권대리인의 자격을 보유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일반증권대리인의 자격만을 가진 자는 옵션업무 등을 취급할 수 없다.

또한 영국이나 캐나다 등의 외국 일반증권대리인 자격도 인정하고

있다. 영국의 증권선물위원회(Securities and Futures Authority)에 등록된 영국 증권대리인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일반증권대리인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그 담당업무가 지방채(Municipal Securities)의 투자권유 또는 매매거래 등과 관련이 없다면 일반증권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캐나다 증권거래소 등에 대리인으로서 등록하거나, 캐나다 증권기관(Canadian Securities Institute)의 연수교육을 수료하거나, 캐나다 일반증권등록대리인 시험에 합격한 자는 그 담당업무가 지방채의 투자권유 또는 매매거래 등과 관련이 없다면 일반증권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나) 투자회사 및 변액계약상품 제한대리인(Limited Representative-Investment Company and Variable Contracts Products)

증권회사에서 담당업무가 투자회사가 발행한 상환부 유가증권, 폐쇄형 Mutual Fund, 변액보험계약 등의 투자권유 및 매매로 제한된 자는 소정의 자격시험(Test Series 6)에 합격하고 투자회사 및 변액계약상품 제한대리인으로서 미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 직접참여프로그램 제한대리인(Limited Representative-Direct Participation Program)

증권회사에서 담당업무가 석유 및 가스사업, 목축사업, 콘도사업 등 직접참여 프로그램의 지분참여와 부채취급 등으로 제한된 대리인은 소정의 자격시험(Test Series 22)에 합격하고 직접참여프로그램 제한대리

인으로서 미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라) 등록옵션대리인(Registered Options Representative)

증권회사에서 옵션을 포함한 증권영업에 종사하는 자는 소정의 자격시험(Test Series 42)에 합격하고 등록옵션대리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옵션대리인은 콜옵션과 풋옵션을 모두 취급할 수 있는 대리인과 콜옵션과 풋옵션중 하나만을 취급할 수 있는 대리인으로 구분된다. 콜옵션 또는 풋옵션의 대리인 자격시험에만 합격한 자는 해당 옵션의 영업에만 종사할 수 있으며, 양쪽 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는 콜옵션과 풋옵션 영업에 모두 종사할 수 있다.

등록옵션 대리인은 일반증권대리인 또는 기업증권제한대리인의 자격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미국증권업협회가 인정할 수 있는 전국증권거래소 회원사의 등록옵션대리인이 해당 증권거래소에 의해 대리인으로 승인되고 등록된 경우에는 협회에 의해 승인되고 자격이 부여된 것으로 간주한다.

마) 기업증권제한대리인(Limited Representative-Corporate Securities)

기업증권제한대리인은 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투자권유 및 매매업무만을 담당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증권제한대리인은 지방채, 옵션, 투자회사가 발행한 상환부 증권, 보험회사의 변액계약, 직접참여프로그램 등의 유가증권 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다. 기업증권제한대리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자격시험(Test Series 62)에 합격해야 한다.

3) 주문처리보조대리인(Assistant Representative-Order Processing)

주문처리보조대리인은 증권회사에서 고객의 유가증권 거래를 위한 주문접수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미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주문처리 보조대리인의 자격상실 등에 따른 재시험요건은 등록관리자의 경우와 동일하다.

그러나 주문처리보조대리인의 업무와 급여 등에 대해서는 제약이 있다. 첫째, 업무범위가 제한된다. 주문처리보조대리인은 고객에게 신규 거래의 권유, 투자조언의 제공, 유가증권 거래의 추천, 유가증권시장에서 유가증권 거래의 체결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둘째, 금전적 보상이 제한된다. 증권회사는 주문처리보조대리인에게 거래규모에 따른 성과급 등의 금전적 보상을 할 수 없다. 셋째, 감독에 관한 제한이 있다. 주문처리보조대리인의 업무수행은 등록관리자의 직접 감독하에 증권회사의 영업장소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4) 등록과 시험의 면제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 미국증권업협회는 등록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 ① 증권회사에서 단순히 행정업무만 담당하는 자
- ② 현재 적극적으로 증권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
- ③ 명목상 증권회사의 관리자 또는 증권회사에 자본만 참여한 자
- ④ 거래소에서 주문을 집행하는 자로서 거래소에 등록된 자

- ⑤ 등록이 면제된 유가증권 또는 상품(Commodities)의 거래업무에
만 종사하는 자

또한 증권회사는 미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거래실적에 따른 보상을 지불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대상고객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제한되며, 거래유치에 대한
보상이 거래실적에 따른다는 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국채, CD, CP 등의 거래에만 종사하는 자를 위한 자격시험
은 없으며, 이러한 업무를 취급하는 자는 등록요건만 갖추면 된다.

5) 국채의 등록관리자와 등록대리인

증권회사에서 국채영업을 담당하는 관리자와 대리인은 미국증권업
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국채의 등록관리자와 등록대리인에 대한 자
격시험은 없으나, 증권회사는 국채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필히 미국증권
업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국채관리자는 다음 업무에 종사한다.

첫째, 다음에 열거된 국채영업의 관리 및 감독: (i)국채의 인수 및
매매, (ii) 국채발행자를 대상으로 한 국채발행과 관련된 재무적 조언이
나 자문, (iii) 국채업무와 관련된 연구조사 또는 투자조언, (iv) 별도로
열거되지 아니한 국채 인수, 매매,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둘째, 다음에 열거된 국채관리업무의 감독: (i) 국채업무와 관련된
절차 및 청산(processing and clearing activities), (ii) 국채영업활동과

관련된 장부기록의 유지

국채대리인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i) 국채의 인수 및 매매, (ii) 국채발행자를 대상으로 한 국채발행과 관련된 재무적 조언이나 자문, (iii) 국채업무와 관련된 연구조사 또는 투자조언, (iv) 별도로 열거되지 아니한 국채 인수, 매매,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국채영업과 관련하여 단순히 행정업무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미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

<표 IV-1> 미국의 증권전문인력제도

| 증권전문인력 | 담당업무 |
|--|--|
| 등록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증권관리자 • 재무 및 운영 제한관리자 • 브로커와 딜러 재무운영 소개 제한관리자 • 투자회사 및 변액계약상품 제한관리자 • 직접참여프로그램 제한관리자 • 등록옵션관리자 • 일반증권판매감독 제한관리자 | 투자권유, 감독, 영업, 교육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업무 총괄 • 재무보고서의 준비, 재무관련규정 준수 감독 및 집행 등 • 고객의 위탁계좌를 갖지 않고 고객의 자금이나 유가증권을 보유하지 않는 증권회사의 재무 및 운영 • 투자회사가 발행한 상환부 유가증권, 폐쇄형 Mutual Fund, 변액보험계약 등에 대한 투자권유 및 매입/매출 • 직접참여프로그램의 지분참여와 부채취급 • 콜옵션이나 풋옵션 등 옵션관련업무 • 유가증권의 판매관리업무 |
| 등록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증권대리인 • 투자회사 및 변액계약상품 제한대리인 • 직접참여프로그램 제한대리인 • 등록옵션대리인 • 기업증권제한대리인 | 중간관리자 이하의 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인 증권업무에 종사 • 투자회사가 발행한 상환부 유가증권, 폐쇄형 Mutual Fund, 변액보험계약 등의 투자권유 및 매매 • 직접참여프로그램의 지분참여와 부채취급 • 콜옵션만 취급, 풋옵션만 취급, 양쪽 모두 취급 • 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투자권유 및 매매업무 |
| 주문처리보조대리인 | 고객의 유가증권거래를 위한 주문접수업무를 담당 |

2. 일본의 증권전문인력제도

가. 도입배경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 일본의 증권산업은 극심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었고, 그 여파로 1965년에는 증시공황이 발생하였다. 1950년대에 상장기업의 대량증자로 증권시장에 공급물량이 급증하여 주가하락의 조짐이 보이자, 증권회사들은 증권시장의 수요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새로운 투자자 유치에 온 힘을 기울였다.

신규투자자를 적극적으로 증권시장에 유인하기 위하여 증권회사는 영업직원을 증가시키고 자기매매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하여 투자자의 이익을 창출하려고 노력하였다. 이 당시에 증권회사는 자기매매 업무와 투자신탁업무를 겸영하고 있었다. 그래서 증권회사들은 보유 중인 상품주식과 투자신탁의 신탁재산을 이용한 주식거래를 통하여 주가조작을 자행하였다.

특히 4대 증권사들은 추천장려판매방식을 이용한 개인투자자 유인 정책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추천장려판매방식은 대형 증권회사가 많이 이용한 방법으로 증권회사는 사전에 특정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한 후, 거래소의 거래가격을 높이면서 회사의 영업망을 통해 일반투자자에게 동 주식의 매입을 적극적으로 추천 장려하고 고객들이 증권회사로부터 주식을 매입시 거래소의 시가보다 다소 싼 가격으로 보유주식을 매각하는 판매방식이다.

증권회사는 보유중인 주식을 매입가격에 비해 고가로 매각하여 차익을 얻고 거래에 따른 위탁수수료 수입을 얻는다. 일반투자자는 시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하므로 혜택을 받는다. 따라서 추천장려판매방식이 적절히 운용되는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모두가 이익을 얻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격조작을 위해 대형 증권회사는 계열사인 투자신탁회사를 동원하고 자전거래를 빈번히 일으킴으로써 가격상승을 유도하였다.

이러한 추천장려판매방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증권회사는 주가에 영향을 주는 기업정보의 수집능력이 뛰어나야 한다. 향후 가격이 상승할 종목을 남보다 먼저 개발하여 미리 매입하여야만 장기적으로 추천장려에 호응한 일반투자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둘째, 다량의 주식을 장기간 보유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있어야 한다. 보유중인 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일반투자자에게 매각하기 위해서는 가격상승 이전에 다량의 주식을 매입하여 보유할 수 있는 자금동원능력이 있어야 한다. 셋째, 신규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판매능력이 있어야 한다. 새로운 투자자를 주식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판매조직과 인원을 갖추어야 한다.

추천장려판매방식은 신규투자자를 끌어들이 1950년대 하반기 이후에 증대된 공급물량의 해소에는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주가조작으로 인해 상승된 주가가 이후에 하락함으로써 일반투자자들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다. 4대 증권회사도 주식을 과다하게 보유함으로써 경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저해되었고, 보유주식의 가격하락으로 인하여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

추천장려판매방식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4대 증권회사와 10대 투자신탁회사들은 결국 경영의 불안정성과 비효율성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위기를 맞게 되었다. 특히 야마이찌 증권회사는 과산위기에 봉착하였고, 결국에는 1965년에 증권공황이 초래되었다.

이러한 증권공황은 1965년 5월 증권거래법 개정을 통한 증권제도의 개혁을 촉진하였다. 증권제도 개혁의 주된 내용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증권회사의 설립요건과 감독을 강화하고 외무원제도를 개선하는 것이었다. 증권회사의 설립을 면허제로 전환하고 자본금 규모에 따라 증권회사의 업무범위에 제한을 두었다. 또한 증권회사의 수신기능 등 부수업무를 제한하고, 증권회사에 대한 대장성의 감독규정을 정비하여 감독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외무원제도를 개선하여 외무원의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외무원의 영업에 대한 증권회사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였다.

1965년말부터 시행된 외무원등록제도는 외무원에 대한 대장성의 직접 감독체제를 확립하여 부적격자를 배제하였다. 그리고 증권회사를 대신하여 영업하는 외무원의 대리권한을 명확히 하고 외무원의 행위는 증권회사가 책임을 지게 하여 책임한계를 분명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보험외무원⁷⁾의 예탁증권 횡령이나 일임매매 등에 따른 고객과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나. 증권전문인력의 업무와 자격요건

일본에서는 증권회사와 증권업무를 영위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원과 종업원의 자격요건을 일본증권업협회가 제정한 공정관습규칙 등에 의하여 규제하고 있다. 「증권 종업원에 관한 규칙」은 공정관습규칙 제8호로서 1974년에 제정되었고, 이후 수차례 걸쳐 개정되었다. 또

7) 모든 증권관련 외무행위를 할 수 있는 일반외무원 중에서 보수가 실적에 따른 성과급으로 지급되는 외무원이다.

한 「증권 종업원에 관한 규칙에 관한 세칙」도 1974년에 제정되었고, 「협회원의 임원에 대한 공정관습규칙 제8호의 준용에 대하여」는 1974년에 증권업협회 이사회에서 결의되었다. 「협회원의 내부관리책임자 등에 관한 규칙」인 공정관습규칙 제13호와 「협회원의 내부관리책임자 등에 관한 규칙에 관한 세칙」, 그리고 「협회원의 외무원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인 공정관습규칙 제15호와 「협회원의 외무원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관한 세칙」 등은 1992년에 제정되었다.

일본의 증권회사의 임원과 종업원 그리고 증권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의 증권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과 종업원은 공정관습규칙 등에 의해 채용과 업무수행에 규제를 받고 있다. 회사는 임원 또는 종업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그들의 경력 등을 심사하여 선량하고 유능한 자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이들이 최근 5년간에 타 증권회사 등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이들이 당해 기간 중에 증권관련 법규 등을 위반하였거나 공정관습규칙을 위반하여 증권업협회로부터 처벌을 받았는지에 대하여 증권업협회에 조회를 하여야 한다. 만약에 이들이 규정 위반에 의해 퇴직 또는 해고에 상당하는 사내처분을 받았거나 그 행위가 증권업의 신용을 현저히 실추시키는 부정행위자로 결정되어 외무원 자격, 영업책임자 자격, 또는 내부관리책임자 자격을 박탈당한 경우에는 결정일 이후 5년 이내에는 채용되거나 인가증권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현재 일본의 증권회사 및 증권관련 업계에서 증권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으로서 일정한 자격이 요구되는 자는 내부관리담당자와 외무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내부관리담당자는 증권업협회 공정관습규칙에 의해 증권회사 등에서 증권업무와 관련된 내부관리를 담당하고, 외무원은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직접 증권영업에 종사한다. 내부관리담당자와 외무원은 각각 일정한 자격요건이나 자격시험 합격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일본증권업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내부관리담당자는 내부관리통괄책임자, 내부관리통괄보조책임자, 영업책임자, 내부관리책임자 등으로 구분된다. 외부원은 일종외무원, 이종외무원, 투신채권외무원, 특별회원 일종외무원, 특별회원 이종외무원, 특별회원 삼종외무원, 보합외무원 등으로 구분된다. 이들의 자격요건과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내부관리담당자

가) 내부관리통괄책임자

내부관리통괄책임자는 회사당 1명으로 일본증권업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내부관리통괄책임자에 대한 자격시험은 없으나, 내부관리통괄책임자는 매년마다 일본증권업협회가 시행하는 연수교육을 수강하여야 한다.

내부관리통괄책임자는 원칙적으로 등기된 대표이사이어야 한다. 그러나 등기된 대표이사가 사장 또는 회장이거나 영업담당 임원인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 특별회원의 내부관리통괄책임자는 인가된 증권업무의 내부관리를 담당하는 임원 또는 관리자이어야 한다.

내부관리통괄책임자는 증권업무의 내부관리에 관한 최고책임자로서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임원 또는 종업원이 영업활동시 증권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며 이를 위한 내부관리체제를 정비하여야 한다.
- ② 회사의 영업활동이 증권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영업책임자와

내부관리책임자를 지도 감독하고 법규 위반시 법령과 제 규칙에 의해 적의 처리하여야 한다.

- ③ 회사 영업활동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행정당국 및 일본증권업협회, 기타 자율규제기관과의 연락 및 조정 역할을 하여야 한다.
- ④ 회사의 영업활동과 고객관리에 관하여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면 즉시 사장에게 보고하고 사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내부관리통괄책임자는 직무 수행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책임으로 감사실, 검사실 등 내부관리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임원이나 부·실장 또는 과장 등을 내부관리통괄보조책임자로 임명하고 담당업무의 일부를 분담시킬 수 있다. 내부관리통괄보조책임자에 대해서도 자격시험은 없으나, 내부관리통괄보조책임자는 매년마다 일본증권업협회가 시행하는 연수교육을 수강하여야 한다.

나) 영업책임자

증권회사의 영업부, 법인부, 국제부, 주식부, 채권부, 지점, 기타 영업과 관련된 부 및 실 등 영업단위의 장은 영업책임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영업책임자는 영업단위내 임직원의 영업활동이 증권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며 투자권유 등의 영업활동과 고객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또한 영업단위내 영업활동과 고객관리에 관하여 중대사안이 발생할 시에는 내부관리통괄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는다.

영업책임자는 증권회사의 임원 또는 일종외무원의 자격을 가진 자

로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영업책임자는 영업책임자 자격시험이나 내부관리책임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영업책임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시험실시일 현재 증권업무 종사기간이 5년 이상 또는 연령이 27세 이상이어야 한다. 영업책임자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한 후에도 회사가 주관하는 사내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한다

다) 내부관리책임자

증권회사는 영업단위마다 내부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내부관리책임자는 원칙적으로 과장급 이상의 종업원으로서 당해 영업단위의 내부관리업무에 종사한다. 그러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주임 또는 대리급 종업원을 내부관리책임자로 임명할 수 있다. 종업원수가 15명 미만인 영업단위의 내부관리책임자는 내부관리통괄책임자 또는 타 영업단위의 내부관리책임자가 겸직할 수 있다.

내부관리책임자는 일종외무원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로서 내부관리책임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내부관리책임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시험실시일 현재 증권업무 종사기간이 5년 이상 또는 연령이 27세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내부관리책임자는 회사가 주관하는 사내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한다.

내부관리책임자는 중간관리자로서 담당하고 있는 영업단위내의 영업활동이 증권관련 법규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상시 감시하는 등의 내부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영업단위내 영업활동과 고객관리에 관한 중대사안이 발생할 시에는 즉시 내부관리통괄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는다.

2) 외무원

일본의 증권산업에는 「외무원」이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다. 증권회사의 종업원이 영업소내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증권회사의 종업원이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증권거래법 등에 의한 증권업무와 관련된 영업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외무원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965년 이전에는 외무원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된 것처럼 1960년대에 외무원의 불법행위가 빈번하자 외무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외무원의 등록을 규정화하였다. 외무원의 불법행위와 무자격자에 의한 외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증권회사는 대장성령에 따라 외무원의 인적사항 등을 일본증권업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외무원은 업무범위에 따라 일종외무원, 이종외무원, 투신채권 외무원, 특별회원 일종외무원, 특별회원 이종외무원, 특별회원 삼종외무원, 보험외무원 등으로 구분된다. 외무원은 기본적으로 일본증권업협회 회원사의 종업원으로 연령이 20세 이상이며 외무원 별로 정해진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외무원은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일종외무원, 이종외무원, 보험외무원 또는 특별회원 일종외무원의 자격을 가진 자는 자격취득 후 3년마다 일본증권업협회가 주관하는 연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외무원은 담당업무의 취급이 금지된다.

가) 일종외무원

일종외무원은 증권거래법에 의해서 증권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모든 증권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즉, 일종외무원이 종사할 수 있는 외무업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유가증권의 매매, 유가증권지수 등 선물거래, 유가증권 옵션거래 또는 외국시장증권선물거래
- ② ①항에서 열거된 거래의 중개, 주선 또는 대리
- ③ ①항에서 열거된 거래 또는 외국유가증권시장에서의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외국시장증권선물거래에 관한 위탁의 중개, 주선 또는 대리
- ④ 유가증권의 인수 및 매출
- ⑤ 유가증권의 모집·매출의 취급 또는 신규 발행 유가증권의 취득 청약의 권유로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지 않는 사모의 취급
- ⑥ 증권업 이외의 업무중 증권회사가 대장대신의 승인을 받은 업무
- ⑦ 유가증권의 매매권유 또는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유가증권매매거래, 외국유가증권시장에서의 유가증권매매거래 혹은 외국시장증권선물거래의 위탁권유

일종외무원은 일종외무원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일본증권업협회가 인정하는 다음에 열거하는 지위와 경력 등을 갖추면 된다.

- ① 회원사에서 부장 또는 과장 등의 관리직에 있으면서 증권업무

종사기간이 3년 이상인 자

- ② 증권회사 또는 외국증권회사에서 부장 또는 과장 등의 관리직으로 있었으며 증권업무 종사기간이 5년 이상인 자
- ③ 증권회사 또는 외국증권회사의 임원이었으며 증권업무 종사기간이 3년 이상인 자
- ④ 기타 지위와 경력 등이 외무행위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나) 이종외무원

이종외무원의 자격은 이종외무원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일본증권업협회의 신입 외무원 연수과정을 수료하면 취득할 수 있다. 이종외무원이 종사할 수 있는 외무업무는 다음과 같다. 다만 유가증권의 사모취급업무와 관련된 외무행위는 할 수 없다.

- ① 주식, 채권 및 수익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 ② 주권 및 수익증권의 매매거래 중 현금거래
- ③ 주권 및 수익증권의 매매거래 중 신용거래에 관련된 것으로서 일종외무원이 동행해서 주문을 수탁하는 것
- ④ 채권매매거래 중 단순매매(매도, 매수) 및 선물거래
- ⑤ 외국투자신탁증권, CP, CD, 금저축구좌 및 저당증권 등과 관련된 외무행위

다) 투신채권외무원

투신채권외무원의 자격은 투신채권외무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취득할 수 있다. 투신채권외무원의 업무는 이종외무원에 비하여 제한적이다. 특히 주식이나 채권과 관련된 업무가 이종외무원에 비해 제한된다.

투신채권외무원은 주식업무 중 누적투자업무, 채권업무 중 채권의 모집 또는 매출 그리고 채권의 단순매매와 관련된 업무만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외국투자신탁증권, 금지축구좌 및 저당증권 등과 관련된 외무행위를 할 수 있다.

라) 특별회원 일종외무원

특별회원 일종외무원은 일본증권업협회의 특별회원에게 인가된 증권업무와 관련된 일체의 외무행위를 할 수 있다. 특별회원 일종외무원은 특별회원 일종외무원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다음에 정한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 ① 일본증권업협회 특별회원인 회원사에서 부장, 과장, 기타 관리직에 있으면서 인가증권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자
- ② 증권회사 또는 외국증권회사에서 부장, 과장, 기타 관리직에 있었으며 증권업무 및 인가증권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자
- ③ 증권회사 또는 외국증권회사의 상근 임원이었으며 증권업무 및 인가증권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자
- ④ 기타 지위와 경력 등이 외무행위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마) 특별회원 이종외무원

특별회원 이종외무원은 특별회원 이종외무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특별회원 이종외무원은 국채, 지방채, 정부보증채와 만기 1년 미만의 단기유가증권의 인수, 매매, 중개와 관련된 외무행위를 취급할 수 있다. 다만, 국채 등의 선물거래와 옵션부 채권거래 그리고 유가증권의 사모업무 등은 취급할 수 없다.

바) 특별회원 삼종외무원

특별회원 삼종외무원은 특별회원 삼종외무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특별회원 삼종외무원은 일본증권업협회 특별회원인 보험회사에서 국채증권의 창구판매업무와 관련된 외무행위를 할 수 있다.

사) 보합외무원

보합외무원은 증권회사와 보합외무원 계약을 체결한 일종외무원 또는 이종외무원으로 증권회사의 종업원과는 달리 외무거래실적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 즉, 보합외무원은 계약에 의해 자격을 취득하고 증권회사의 직원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보수는 외무거래실적에 의해 결정된다.

보합외무원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일종외무원 또는 이종외무원으로서 증권회사에서 증권업무에 종

사한 기간이 7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일본증권업협회에서 정한 부정행위자로 처벌을 받지 않고, 최근 3년간 소속된 증권회사에 의해 해고, 보험외무원 계약해제, 강등, 직무정지, 감봉 또는 이들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처분을 받고 일본증권업협회에 사고전말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표 IV-2> 일본의 증권전문인력제도

| 증권전문인력 | 담 당 업 무 |
|--|---|
| 내부관리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관리통괄책임자 • 영업책임자 • 내부관리책임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업무 내부관리의 최고책임자 • 영업단위내 임직원의 영업활동과 고객관리의 지도 및 감독 • 중간관리자로서의 내부관리업무 |
| 외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종외무원 • 이종외무원 • 투신채권외무원 • 특별회원 일종외무원 • 특별회원 이종외무원 • 특별회원 삼종외무원 • 보험외무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소이외의 장소에서 증권영업행위를 행함 • 증권회사의 모든 업무 • 선물, 옵션을 제외한 모든 업무 • 채권의 모집 또는 매출, 채권의 단순매매와 관련된 업무 • 특별회원에게 인가된 모든 업무 • 국채, 지방채, 정부보증채, 만기 1년 미만의 단기유가증권의 인수·매매·중개 • 보험회사에서 국채증권의 창구판매업무와 관련된 외무행위 • 일종외무원 또는 이종외무원으로 외무거래실적에 따른 보수계약체결 |

3. 우리 나라의 증권전문인력제도 8)

가. 투자상담사

우리 나라의 증권산업에 종사하는 증권전문인력에 관한 규제는 한국증권업협회가 정한 공정관습규칙 제3호인 「증권종업원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전장에서 논의된 것처럼 일본에서는 증권업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을 내부관리담당자와 외부원으로 구분하여 규제하고 있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일본의 외부원과 유사한 투자상담사만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증권회사 직원이 투자상담을 하는 경우에 외부원 자격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영업소 내에서 투자상담을 할 때에도 투자상담사의 자격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우리 나라 제도는 미국식 자격제도와 유사한 면이 있다.

투자상담사는 증권거래법에 근거한 제도로서 일반투자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이다. 따라서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투자상담사는 증권업 종사자로서의 자질과 영업상 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증권거래법에 따라 투자상담사가 담당하는 업무는 증권회사의 임직원으로서 회사의 이익증진을 위한 유가증권의 매매업무나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매매거래의 위탁을 권유하는 업무, 고객을 위한 투자상담업무 등이다. 즉, 투자상담사는 일반투자자를 위하여 유가증권

8) 본 장의 내용은 윤명수(1992), 한국증권업협회(1996a, 1996b) 등을 참고로 하였다.

의 거래를 권유하거나 투자상담을 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상담사는 일정수준의 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자격시험의 합격이나 경력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증권거래법과 동법 시행령에서는 투자상담사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투자상담사의 관리를 위하여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할 것을 정하고 있다. 증권거래법시행령에서 정한 투자상담사의 자격요건에 의하면 증권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증권연수원이 시행하고 있는 투자상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증권관계기관의 과장급이상의 직급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투자상담사 자격이 부여된다. 또한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 및 유가증권옵션거래에 관한 투자상담사는 상기 요건 외에 증권연수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이에 필요한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른 자격증과 달리 투자상담사가 자격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등록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즉, 증권회사에 의한 증권업협회 등록을 투자상담사의 자격요건으로 하고 있다. 투자상담사는 증권회사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증권회사는 소속된 투자상담사를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따라서 투자상담사가 소속된 증권회사를 떠나게 되면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나. 투자상담사의 종류

투자상담사는 보수지급 방법에 따라 내근투자상담사와 전담투자상담사로 구분되고, 투자상담사가 담당할 수 있는 업무범위에 따라 1종 투자상담사와 2종 투자상담사로 구분된다. 내근투자상담사는 증권회사

의 정규직원으로서 일반업무와 함께 투자상담사의 업무를 수행한다. 전담투자상담사는 증권회사와 개별적으로 투자상담사 업무에 관한 고용계약을 맺고 약정실적에 따라 성과급인 보수를 지급받는 자유직업 소득자이다.

1) 1종 투자상담사

1종 투자상담사는 유가증권 거래의 위탁권유와 유가증권 매매거래에 관한 투자상담과 함께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 및 유가증권옵션 거래에 관한 투자상담을 할 수 있다. 즉, 2종 투자상담사의 업무는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한 투자상담으로 제한되지만 1종 투자상담사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상품에 관한 투자상담을 할 수 있다.

1종 투자상담사의 자격 취득은 2종 투자상담사로 제한된다. 2종 투자상담사로서 증권연수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1종 투자상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1종 투자상담사의 자격이 부여된다. 여기서 소정의 과정이수란 시험 실시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3년 이내에 증권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선물투자상담사 자격과정, 선물옵션 기초과정 또는 선물옵션 전문과정 중에서 1개 과정 이상을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

2) 2종 투자상담사

2종 투자상담사는 증권회사를 위하여 유가증권의 매매나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매거래의 위탁을 권유하거나 고객을 위한 투자상담 및 주

문 전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2종 투자상담사의 자격취득은 증권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2종 투자상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5년 이상 증권관계 기관의 과장급 이상의 직급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표 IV-3> 투자상담사제도

| | 1종 투자상담사 | 2종 투자상담사 |
|----------|---|---|
| 취급 업무 | 현물, 선물, 옵션거래 | 현물거래 |
| 자격 요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종 투자상담사 자격 취득 • 1종 투자상담사 교육과정 이수 • 1종 투자상담사 자격시험에 합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관계회사 1년 이상의 근무 경력을 갖추고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 증권관계기관에서 과장급이상의 관리자로서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

3) 투자상담사 관리 및 교육

투자상담사는 증권회사를 위하여 일하는 자이므로 투자상담사에 대한 관리책임은 이를 고용한 증권회사가 담당하여야 한다. 따라서 증권회사는 투자상담사에 대한 관리책임자(영업담당 이사)와 영업장별 관리실무책임자(본점 영업담당부장, 지점장, 출장소장)를 임명하여 투자상담사를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투자상담사의 관리를 위하여 투자상

담사 관리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투자상담사는 증권업무에 관한 전문인력으로 이들에 관한 자격요건은 공적기관에서 관리하고, 증권시장의 안정과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이들에 대한 보수교육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한국증권업협회는 「투자상담사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교육, 자격시험, 등록 및 해임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리하며 투자상담사 관리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증권회사에 대하여 투자상담사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증권회사 영업직원들의 종합적인 투자관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투자상담사에 대한 다양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투자상담사의 자격을 소지한 자는 한국증권업협회가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임원, 부장, 지점장 등은 그 직무의 성격을 감안하여 직무교육을 면제하고 있다.

V. 증권전문인력의 적격성제도

1. 적격성제도의 필요성
2. 각국의 증권산업 종사자에 대한 적격성제도

V. 증권전문인력의 적격성제도

1. 적격성제도의 필요성

증권시장은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이 거래되는 장소로서 거래의 안정성과 투명성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증권시장이나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투자자가 안심하고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증권시장의 신뢰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 증권시장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증권산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일반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증권산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격성 요건을 엄격히 시행하고 있다. 일본이나 우리 나라도 증권산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정하고는 있으나 미국이나 영국의 제도에 비해 다소 융통성이 있어, 과거에 이를 악용한 사례가 종종 있었다.

증권영업은 환금성이 높고 가격변동이 심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증권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투자권유나 자산운용에 따라서 투자자의 자산가치는 큰 영향을 받는다. 또한 증권 가격변동에 관한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증권회사 직원의 순간적인 의사결정의 잘못으로 인하여 증권회사나 고객이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1960년대에 미국에서 일반투자자가 증권회사에 위탁한 자금을 증권회사 직원이 과도하게 주식투자에 운용하여 고객에게 손실을 입힌 사례가 많이 있다. 즉, 증권회사의 영업직원이 수수료수입을 목적으로 고객이 위탁한 자금을 이용하여 과도하게 빈번히 주식을 매매거래하여

고객에게 큰 손실을 입힌 사례가 있다. 또한 최근의 영국 베어링 증권 회사의 파산도 한 직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실을 일정 한도 이내로 제한하지 못하여 발생하였다. 그리고 일본의 노무라증권회사를 비롯한 대형증권회사가 총회꾼에게 증권거래를 통해 입은 손실을 관례적으로 보상한 조치도 증권회사에 손실을 끼친 예가 될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일임매매 등에 따른 투자손실의 책임문제에 관하여 고객과 증권회사간에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일반투자자가 증권회사에 위탁한 자금을 증권회사 직원이 임의로 운용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손실에 대한 책임 소재 문제가 발생하며, 이는 증권시장과 증권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증권산업 종사자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일반투자자의 이익침해와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성 저해는 사전에 방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미국 등 선진 각국에서는 증권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자격요건을 엄격히 시행함으로써 이러한 가능성을 최소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적격성제도가 엄격히 시행되고 있는 미국과 영국의 적격성제도와 비교적 덜 엄격한 일본과 우리 나라의 제도를 검토하여 적격성제도 개선방안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2. 각국의 증권산업 종사자에 대한 적격성제도

가. 미국

앞에서 논의된 것처럼 미국에서 증권산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은 미국증권업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Securities Dealers) 규정에 따라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미국증권업협회의 회원과 회원사와 제휴관계 등을 갖는 자는 미국증권업협회의 정관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미국증권업협회 정관에는 회원 또는 회원과 제휴할 수 있는 자와 그러한 자격의 결격사유가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증권회사에서 증권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미국증권업협회 규정에 따라 업무별로 필요한 자격시험 합격 등의 자격을 갖추고 정관에 명시된 부적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이러한 규정들은 전문화된 증권산업 종사자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함께 전문인으로서 품성을 갖추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빈번히 발생하는 증권관련 사고는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증권산업 종사자에 대한 적격성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러한 규정들이 강화되고 있다.

미국증권업협회 정관에는 증권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결격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결격사항은 자율규제기관에 의한 등록거부, 범죄행위로 인한 유죄판결, 서류작성시 중요한 사실의 은폐 또는 우편관련 사기행위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미국에서 증권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미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내외 증권거래소나 자율 규제기관 등에 등록할 수 없는 자가 증권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또한 유가증권매매나 기타 중범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10년간 증권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그리고 자율규제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할 때 중요한 사실의 은폐행위나 전화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한 사기행위는 매우 엄격히 처벌하여 이러한 범죄를 범한 자의 증권업무 취급을 금하고 있다.

미국증권업협회 정관에 규정된 증권산업 종사자에 대한 구체적인 결격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자율규제기관, 외국의 자율규제기관, 외국 또는 국제 증권거래소, 상품거래법(Commodity Exchange Act)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계약시장, 실질적으로 이와 동등한 외국의 법률 또는 규정에 따라 지정된 외국의 계약시장, 상품거래법 제17조에 따라 등록된 선물협회, 실질적으로 이와 동등한 외국의 법률 또는 규정에 따라 지정된 외국의 선물협회 등에의 참여가 배제 혹은 정지되었거나 현재 이러한 상태에 있는 자, 또는 이들 기관의 회원과의 제휴가 금지 혹은 정지되었거나 현재 이러한 상태에 있는 자, 또는 동 계약시장이나 외국 계약시장에서의 거래권한이 거부된 자

나-1) 증권관리위원회나 다른 규제기관 또는 외국 재무규제기관의 명령에 의해

① 브로커, 딜러, 지방채 딜러, 국채 브로커, 국채 딜러로서 등록이 거부되거나,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정지되거나, 취소된 자, 또는 본질적으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외국인으로서 그의 활동이 제한된 자

② 브로커, 딜러, 지방채 딜러, 국채 브로커, 국채 딜러, 또는 본질적으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외국인 등과의 제휴관계가 금지되거나,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정지된 자

나-2) 상품선물위원회(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의 명령에 따라 상품거래법에 의한 등록이 거부, 정지, 또는 취소된 자

나-3) 외국 재무규제기관의 명령에 의해 계약시장이나 거래소이사회 등의 규정에 따라 미래에 인도되는 상품 혹은 기타 증서의 판매계약의 거래행위에 종사할 수 있는 권한이 거부, 정지, 또는 취소된 자

다) 브로커, 딜러, 지방채 딜러, 국채 브로커, 국채 딜러와 제휴, 또는 상품거래법에 의해 등록이 요구되는 자와 제휴시 그의 행위에 의해 실질적인 정지, 제명, 또는 상기 가) 또는 나)의 조항에 규정된 기관에 의한 명령의 원인이 된 자

라) 브로커, 딜러, 지방채 딜러, 국채 브로커, 국채 딜러, 기타 유가증권 거래에 종사하는 기관과 제휴하는 동안에, 또는 계약시장, 거래소이사회 등의 규정에 따라서 거래되는 미래에 인도되는 상품 혹은 기타 증서의 판매계약의 거래에 종사하는 기관과 제휴하는 동안에, 그의 행위에 의해서 실질적인 정지, 제명, 또는 상기 가) 또는 나)의 조항에 규정된 재무거래에 관한 외국 또는 국제 규제기관에 의한 명령의 원인이 된 자

마) 상기한 가), 나), 다), 라) 등 4개항에 해당되는 자 또는 합리적인 주의를 하였을 경우에 해당됨을 알 수 있는 자와 제휴한 자

바) 자율규제기관에의 가입신청서, 자율규제기관의 회원인 증권회사와 제휴관계를 맺기 위한 신청서, 또는 자율규제기관에 제출되는 보고서, 자율규제기관의 진행서류 등에서 상황에 비추어 보아 고의로 중요

한 사실을 허위 기재 또는 오해하도록 작성하거나, 기재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을 신청서, 보고서, 진행서류 등에서 누락시킨 자

사-1) 증권회사와 제휴관계를 맺기 전 10년간 또는 제휴관계를 맺은 이후에 다음에 열거된 범죄나 비행으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거나 외국의 관할법원에 의해 실질적으로 동등한 범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

- ① 유가증권의 매수나 매도, 허위선서, 허위보고서 작성, 뇌물수수, 위증, 강도, 본질적으로 이러한 범죄에 해당되지만 외국정부의 법률에 의해 지배되는 행위, 또는 이러한 범죄의 공모와 관련된 범죄
- ② 브로커, 딜러, 지방채 딜러, 국채 브로커, 국채 딜러, 투자자문업자, 은행, 보험회사, 신탁업자, 명의개서대리인, 본질적으로 이에 해당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외국인, 상품거래법이나 본질적으로 이에 해당하는 외국의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 등록이 요구되는 자의 영업활동 중에 발생한 범죄
- ③ 절도, 강도, 강탈, 문서위조, 위조, 악의의 묵비, 횡령, 사기적 횡령, 자금 또는 유가증권의 유용, 또는 본질적으로 이에 해당되지만 외국정부의 법률에 의해 지배되는 범죄
- ④ 우편 및 전신을 이용한 사기(Mail and Wire Fraud)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 또는 본질적으로 이에 해당되는 외국법률의 위반과 관련된 범죄

사-2) 증권회사와 제휴관계를 맺기 전 10년 이내에 또는 맺은 이후에 기타 중범죄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자

아) 관할법원의 명령 등에 의해 투자자문업자, 유가증권인수업자, 브

로커, 딜러, 지방채 딜러, 국채 브로커, 국채 딜러, 명의개서대리인, 본질적으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외국인, 상품거래법 또는 본질적으로 이에 해당되는 외국의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 등록이 요구되는 자로서의 행위, 또는 투자회사, 은행, 보험회사, 본질적으로 이에 해당되는 외국기관의 동업자나 직원으로서의 행위, 또는 이러한 활동이나 유가증권의 매수 및 매도와 관련된 행위와 관련된 행위 또는 실무에 종사하는 것 등이 영구히 또는 일시적으로 금지된 자

자) 외국의 재무규제기관에 의해 다음에 열거된 사실이 발견된 자

자-1) 등록신청서나 외국의 재무규제기관에 제출된 보고서 또는 등록과 관련된 외국 규제기관의 진행서류 등에서 그 당시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허위 혹은 오해를 유발하는 진술을 하거나 하도록 하거나, 또는 외국 재무규제기관에 대한 신청서나 보고서에서 요구되는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는 행위

자-2) 계약시장이나 거래소이사회 등의 규정에 따라서 거래되는 유가증권 또는 미래에 인도되는 상품의 판매계약의 거래행위에 관한 외국의 법률이나 규정의 위반

자-3) 계약시장이나 거래소이사회의 규정에 따라서 거래되는 유가증권 또는 미래에 인도되는 상품의 판매계약의 거래와 관련된 외국의 재무규제기관에게 권한을 부여한 외국정부에 의해 제정된 법률이나 규칙 등의 위반을 방조, 교사, 조언, 명령, 권유, 유발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법률, 규정, 규칙 등의 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신이 감독하고 있는 자의 위반행위를 합리적으로 감독하지 못하였다고 외국 재무규제기관이 인식하는 행위

나. 영국

영국의 증권전문인력제도는 미국의 제도와 유사하다. 영국에서는 금융서비스법에 의해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만이 증권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동 법에 따라 증권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증권선물협회(The Securities and Futures Authority)에 등록하여야 한다.

금융서비스법에 의해 증권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증권업무 종사에 관한 적합성(Fit and Proper)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증권회사는 증권선물협회의 회원으로, 회원은 자동적으로 증권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며 회원사에서 증권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은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자율규제기관인 증권선물협회는 회원자격과 증권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협회에 등록해야 하는 회원사 직원의 적격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증권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적격성 요건의 충족은 원칙적으로 회원사가 책임지고 있다. 즉, 회원사는 증권선물협회에 등록하고자 하는 직원이 증권업무에 적합한 자임을 대외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증권선물협회가 정한 직원의 적격성(Fit and Proper)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재무상 완전 및 신뢰 가능성

증권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재무상 완전하여야 한다. 즉, 금전적으

로 완전한 상태이어야 한다. 증권선물협회에 등록을 신청한 자는 파산 판결, 파산재산의 관리판결, 재산의 가압류 또는 채권자와 채무정리 등이 없어야 한다. 또한 신청인은 파산신청이나 판결에 의한 채무를 불이행한 적이 없어야 한다.

2) 유죄판결 여부

증권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세금포탈 등과 같은 경제행위에 의한 범법사실이 없어야 한다.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 이외의 모든 유죄판결은 세금포탈에 의한 처벌과 동일시된다. 또한 민사소송에서 5,000파운드를 초과하는 배상을 한 경우도 유죄판결의 경우와 같이 취급된다. 이러한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3) 적절한 교육과 경력의 보유

증권업무 종사자는 전문직업인으로서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지식의 함양여부에 관한 기준은 증권선물협회가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의한다. 증권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증권선물협회가 정한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면제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4) 평판과 품성

증권업무는 고객의 재산관리와 직결되므로 증권업무 종사자는 항상

높은 평판과 훌륭한 품성을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적합성 기준에서도 증권업무 종사자가 갖추어야 할 평판과 품성을 규정하고 있다. 평판과 품성에 관한 기준은 증권선물협회가 판단하기에 전문직업인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즉, 증권선물협회는 평판과 품성에 관한 결격요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평판과 품성에 관한 결격요인은 다음과 같다.

- ① 특정한 면허, 등록 또는 허가가 필요한 상행위 또는 전문직업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자
- ② 신청인이 소속된 전문직업단체에 의해 조사 및 징계절차, 견책, 징계 또는 공식적인 비판의 대상이 된 자
- ③ 전문직업인으로서 자격취득이 거절되거나, 면직되거나 사임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는 자
- ④ 재무활동과 관련된 직업단체의 가입이 거절된 적이 있는 자

일반적으로 모든 법률위반에 관한 유죄판결도 증권전문인으로서의 평판과 품성을 평가할 때 고려된다. 하지만 증권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증권선물협회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 자신의 평판과 품성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데 대한 필요조건은 없다.

증권선물협회가 증권업무 종사자의 직무상 직위 등을 고려할 때에 신청인에게 불리한 자료를 포함한 명성과 고객과의 관계 등도 중요시된다.

5) 능력, 정직, 공정성

증권업무 종사자의 미래 활동과 관련하여 이들의 업무상 능력, 정직, 공정성 등도 적격성 기준으로 적용된다. 이러한 기준은 일반대중에 대한 합리적인 표준 서비스의 제공과 증권산업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증권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신청인이 그의 임무를 효율적이고, 정직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유가 있으면 증권선물협회는 이들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다. 일본

일본의 증권 종업원에 대한 적격성 기준은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 비교적 덜 엄격하다. 일본증권업협회가 정한 공정관습규칙 제8호인 「증권종업원에 관한 규칙」에 의해 증권업무에 부적합한 자는 부정행위자로 분류되며 이들의 증권업무 종사가 금지된다. 그러나 증권업협회의 결정에 따라 이들에 대한 부정행위자 취급이 해제될 수 있으며, 증권업무의 종사 또는 채용이 금지되는 기간은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 단기간인 5년으로 되어 있다.

증권업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증권회사는 종업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이들이 증권업무 종사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증권회사는 「증권 종업원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종업원 채용 시 이들이 선량하고 유능한 종업원이 될 수 있는 자인가를 그 자의 경력 등에 의해 심사하여야 한다.

특히 채용하려는 자가 최근 5년 이내에 타 회사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일본증권업협회에 이들의 제반규정 위반여부를 조회하여야 한다. 일본증권업협회는 중대한 과실을 범하여 부정행위자로 분류

된 증권회사 종업원의 명단을 관리한다. 일본증권업협회가 부정행위자로 결정한 자는 부정행위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채용되거나 증권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일본증권업협회의 심사에 의해 부정행위자 취급이 해제된 경우에는 증권회사에 의한 채용이나 증권업무 종사가 가능하다.

증권회사는 종업원이 준수해야 하는 법령이나 「증권 종업원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금지행위 또는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권업협회에 보고해야 한다. 증권업협회는 종업원이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퇴직 또는 해고에 상당하는 사내처분을 받고 그 행위가 증권업의 신용을 현저히 실추시키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관련된 종업원을 부정행위자로 결정한다.

「증권 종업원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종업원의 금지행위는 다음과 같다.

(1)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 또는 유가증권옵션거래 등과 관련하여 유가증권의 가격 또는 옵션의 대가액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등의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여 권유하는 것.

(2) 유가증권지수 등 선물거래와 관련하여 약정지수 및 현실지수 또는 약정수치 및 현실수치가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등의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여 권유하는 것.

(3)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혹은 그 수탁 또는 유가증권지수 등 선물거래 혹은 유가증권옵션거래의 수탁에 대하여 고객의 개별거래마다 동의를 받지 않고 매매별 종목, 수 또는 가격에 대하여 정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4) 유가증권의 매매, 유가증권지수 등 선물거래 또는 유가증권옵션

거래에 대하여, 신탁계약에 근거하여 신탁을 하는 자의 계산으로 이들 거래를 행하는 신탁회사 또는 은행의 신탁업무 경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인가를 받은 은행을 고객으로 하는 경우에, 당해 신탁계약에 따라 당해 신탁회사 등이 이들 거래에 관한 주문을 당해 신탁을 하는 자의 지시에 따라 행하는 경우에, 당해 신탁을 하는 자와의 사이에 매매별, 종목, 수 또는 가격에 대하여 당해 신탁을 하는 자의 개별거래 시마다 지시를 받지 않고 당해 신탁을 하는 자를 대리하여 당해 신탁회사 등에 대하여 지시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5)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 등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킬 표시를 하는 것.

(6)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 등에 관하여, 고객에 대해서 위탁수수료의 할인, 기타 이와 유사한 특별이익의 제공을 약속해 권유하거나 실행하는 것.

(7) 특정종목의 유가증권, 유가증권지수 또는 옵션에 대하여 실세를 반영치 않은 작위적 시세가 형성되는 것을 알면서 일련의 유가증권의 매매, 유가증권지수 등 선물거래, 유가증권옵션거래 또는 외국시장증권 선물거래의 주문을 받는 것.

(8) 직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혹은 직무상 지득한 정보에 근거하거나 투기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 유가증권지수 등 선물거래, 유가증권옵션거래 또는 외국시장증권 선물거래를 행하는 것.

(9) 고객의 유가증권매매가 내부자거래에 해당하거나 내부자거래에 해당할 염려가 있는 것을 알면서 당해 주문을 받는 것.

(10)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에 관하여 고객에게 법인관계정보를

제공해서 권유하는 것.

(11) 법인관계정보에 근거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유가증권의 매매를 하는 것.

(12) 모집 또는 매출에 관련된 유가증권의 발행자인 회사의 임원 기타 안정조작 거래의 위탁을 할 수 있는 자임을 알면서 그 자로부터 모집 또는 매출에 관련된 유가증권의 발행자인 회사가 발행하는 주권으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거나 장외매매유가증권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안정조작거래기간 내에 집행하는 조건의 매입주문을 수탁하는 것.

(13)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 또는 유가증권지수 등 선물거래, 유가증권옵션거래 혹은 외국시장증권선물거래에 대하여 당해 유가증권 또는 유가증권지수 등 선물거래, 옵션 혹은 외국시장증권 선물거래에 대하여 고객에게 손실이 생기거나 또는 미리 정해진 액수의 이익이 생기지 않게 될 경우에는 자기 또는 제3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거나 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고객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다는 뜻을 당해 고객 또는 그가 지정한 자에 대하여 신청 혹은 약속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신청 혹은 약속시키는 것.

(14)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 또는 유가증권지수 등 선물거래, 유가증권옵션거래 혹은 외국시장증권 선물거래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당해 유가증권 또는 유가증권지수 등 선물거래, 옵션 혹은 외국시장증권 선물거래에 대하여 발생한 고객의 손실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보전하고 또는 이들에 대하여 발생한 고객의 이익에 추가하기 위해 당해 고객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다는 뜻을, 당해 고객 또는 그 지정한 자에게 신청 혹은 약속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신청 혹은 약속시키는 것.

(15)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 또는 유가증권지수 등 선물거래, 유가증권옵션거래 혹은 외국시장증권선물거래에 대하여 당해 유가증권 또는 유가증권지수 등 선물거래, 옵션 혹은 외국시장증권 선물거래에 대하여 발생한 고객의 손실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보전하거나 이들에 대하여 발생한 고객의 이익에 추가하기 위해 당해 고객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제공시키는 것.

(16) 고객의 동의없이 당해 고객의 계산으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 등을 행하는 것.

(17) 어떠한 명의를 사용하는가 관계없이 소속협회원의 서면상의 승낙을 얻지 않고 타협회원에게, 당해 종업원 또는 당해 종업원의 중개에 관련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 등의 주문을 내는 것.

(18) 어떠한 명의를 사용하는가 관계없이 타협회원의 종업원으로부터 당해 타협회원의 서면에 따른 승낙을 받지 않고 당해 종업원 또는 당해 종업원의 중개에 관련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의 주문을 받는 것.

(19) 어떠한 명의를 사용하는가 관계없이, 자기의 계산으로 신용거래 또는 유가증권선물거래, 유가증권지수 등 선물거래, 유가증권옵션거래 혹은 외국시장증권 선물거래를 행하는 것.

(20) 고객카드 등에 의하여 지득한 투자자금의 금액 및 기타 사항에 비추어, 과도한 수량의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 등의 권유를 행하는 것.

(21)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 등에 대하여 고객과 손익을 같이 할 것을 약속하여 권유 또는 실행하는 것.

(22)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 등의 주문을 받은

경우에 자기가 그 상대방이 되어 매매 기타 거래 등을 성립시키는 것.

(23) 고객의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 등 또는 그 명의개서에 대하여 자기 혹은 친척 기타 자기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명의 또는 주소를 사용케 하는 것.

(24) 고객으로부터 주식의 매매거래 주문을 받은 경우에 본인 이외의 명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 당해 주문을 받는 것.

(25) 자신의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 유가증권지수 등 선물거래, 유가증권옵션거래 또는 외국시장증권 선물거래에 대하여 고객의 명의 또는 주소를 사용하는 것.

(26)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등의 수속의뢰를 받은 경우에, 소속협회원을 통하지 않고 수속을 행하는 것.

(27) 고객으로부터 소속협회원에 교부하기 위해 예탁된 금전, 유가증권 혹은 금지금 또는 소속협회원으로부터 고객에게 교부하기 위해 예탁된 금전, 유가증권 혹은 금지금을 지체없이 인도하지 않는 것.

(28) 소속협회원으로부터 고객에 교부하기 위해 예탁된 업무에 관한 서류를 지체없이 당해 고객에게 교부하지 않는 것.

(29)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 등에 관하여 고객과 금전, 유가증권 또는 금지금의 대차를 행하는 것.

(30)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것.

(31) 공모주 등에 대하여 발행회사가 지정한 판매선으로 매도를 행하는 등, 공정을 결한 판매를 행하는 것.

(32) 소속영업단위의 내부관리책임자의 심사를 받지 않고 종업원에

대하여 정품류의 제공을 하는 것.

(33) 고객에 대하여 용자, 보증 등의 특별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여 인가증권업무에 관련된 거래를 권유하는 것.

(34) 인가증권업무에 관련된 거래에 대하여 명확히 위탁증거금의 신규 또는 추가차입이 될 신용공여를 행하는 것.

(35) 인가증권업무에 관련된 거래와 관련하여 고객에 대하여 신용공여의 조건으로 당해 거래를 강요하는 것.

그리고 「증권 종업원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된 다음에 열거한 부적절행위를 종업원이 행하지 않도록 증권회사는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 ① 종목, 가격, 수량, 지수 또는 성립가의 구별 등 고객의 주문내용에 대하여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주문을 집행하는 것.
- ② 유가증권 또는 유가증권지수 등 선물거래, 옵션 혹은 외국시장증권 선물거래의 성격 또는 거래의 조건에 대하여 고객을 오인시키는 권유를 하는 것.
- ③ 유가증권의 가격, 옵션의 대가액 및 유가증권지수 등 선물거래의 약정지수 및 현실지수 또는 약정수치 및 현실수치가 등귀 혹은 상승하거나 하락 혹은 저하하는데 대하여 고객을 오인시키는 권유를 하는 것.
- ④ 고객의 주문집행에서 과실로 사무처리를 잘못하는 것.

라. 우리 나라

우리 나라 증권업무 종사자에 대한 자격요건의 제한은 임원, 종업원, 투자상담사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증권회사 임원과 투자상담사의 자격은 증권거래법과 증권거래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종업원의 자격에 관한 제한은 한국증권업협회의 「증권종업원에 관한 규칙」에 정해져 있다.

증권거래법 제33조에서는 증권회사 임원의 자격과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다. 증권회사의 임원은 증권거래법 시행령에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즉, 증권관계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금융기관 또는 보험관계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기타 학식과 경험에 비추어 증권업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함에 있어서 자격이 있다고 증권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자는 증권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또한 증권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열거한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①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②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증권거래법 또는 외국증권법령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에 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③ 증권거래법에 의해 허가가 취소된 증권회사의 취소 당시 임원이

있던 자로서 그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④ 증권거래법 또는 외국증권법령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우리 나라 증권회사가 종업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자의 학력과 경력 등을 감안하여 선량하고 유능한 종업원이 될 수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또한 증권시장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고객과의 분쟁을 야기시킨 종업원은 자체 기준을 정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증권회사는 종업원 채용시에 한국증권업협회가 정한 공정관습규칙 제3호인 「증권종업원에 관한 규칙」에 따라 비위행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한국증권업협회에 조회하여야 한다. 한국증권업협회는 비위행위자의 인적사항과 비위행위내용 등을 기재한 비위행위자 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증권회사의 조회가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비위행위자 여부를 서면으로 회답하여야 한다.

증권회사의 종업원으로 채용될 수 없는 경우는 증권종업원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비위행위자로서 비위행위자로 분류된 이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이다. 비위행위자는 다음에 열거한 조항에 해당된다.

- ① 증권회사의 자체감사 결과 징계퇴직 처분을 받거나, 그 행위가 징계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 자진 퇴직한 자
- ② 법령 등을 위반하여 증권관리위원회 또는 증권감독원으로부터 면직처분 요구 및 면직상당 퇴직자 관련 지적사항 통보를 받은 자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③ 증권회사의 자체감사 결과 또는 감독기관으로부터 4개월 이상의 감봉 및 정직에 해당하는 문책을 받았거나 문책을 요구받은 자

①항과 ②항에 의한 비위행위자는 비위행위자로 결정된 이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증권회사 종업원으로 채용이 금지되고, ③항의 경우 정직시에는 2년, 감봉시에는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증권회사에 의한 채용 또는 증권관련업무 종사가 금지된다.

투자상담사는 증권회사의 임직원으로서 증권영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투자상담사의 자격요건은 앞장에서 논의하였다. 그렇지만 투자상담사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증권회사에서 투자상담사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열거한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① 증권거래법에 의해 증권회사의 임원으로 채용이 금지된 자
- ② 증권감독원에 의해 투자상담사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③ 사위(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신청한 자
- ④ 증권거래법에 의해 증권관리위원회로부터 해임명령을 받은 증권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로서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⑤ 징계처분에 의해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⑥ 증권거래법에 의해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직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VI. 증권전문인력제도 개선방안

1. 제도 개선의 필요성
2. 제도 개선방안

VI. 증권전문인력제도 개선방안

1. 증권전문인력제도 개선의 필요성

자본시장의 개방으로 외국 증권회사와 외국자본의 국내 진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이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증대되고 있다. 또한 금융개혁에 따라 증권산업에 대한 진입규제가 완화되어 금융의 겸업화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라 증권산업에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증권회사의 경영위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증권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증권시장에서 투자자의 이익이 보호되어야 하며, 증권회사 경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증권시장과 증권회사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신뢰성 제고와 증권회사 경영의 건전화는 증권산업 선진화의 기초가 된다.

선물·옵션 등 파생금융상품의 도입과 증권산업의 국제화로 증권회사의 경영위험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증권투자와 관련된 위험의 증대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투자자 재산의 성실한 관리자이며 투자조언자로서 전문적인 지식과 소양을 갖춘 증권전문인력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증권회사와 증권시장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신뢰를 제고하고 증권회사 경영의 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증권회사에서 영업을 관리하는 임직원에 대한 자격제도의 강화도 필요하다. 즉, 증권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증권산업에 종사하는 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자격제도의 도입과 함께 적격성 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나라에서도 증권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과 이들이 준수해야 하는 금지행위 등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을 위반했을 때 받는 처벌이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미약하기 때문에 규정 시행의 실질적인 효력이 의문시된다. 따라서 증권산업 종사자에 대한 적격성제도를 강화하여 증권산업 종사자들의 규정 위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증권시장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신뢰성 저하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2. 증권전문인력제도 개선방안

증권전문인력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증권회사에서 영업에 관여하는 임직원에 대한 자격요건의 강화와 증권회사 직원에 대한 적격성 제도의 강화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증권회사에서 영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와 같이 증권회사에서 영업행위를 관리하는 관리책임자와 일선에서 영업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앞에서 논의된 것처럼 우리 나라에서는 투자상담사 제도가 증권영업에 관한 전문인력제도로써 운용되고 있다. 현재 1종 및 2종 투자상담사가 주식 또는 선물 등의 투자에 관한 투자상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투자신탁상품이 국내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매우 높고 상품의 종류와 내용이 매우 다양하여 일반투자자들의 금융상품의 선택이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금융상품투자에 관한 상담을 담당할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또한 선물·옵션 등 파생금융상품의 도입으로 증권회사의 영업환경이 매우 복잡해져서 증권회사가 부담하는 경영위험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따라서 증권회사가 부담하는 경영위험을 적정한 수준에서 관리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경영위험의 증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을 관리하는 관리자와 영업담당자에 대한 자격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증권영업 관리에 관한 자격을 갖춘 관리자는 회사영업을 총괄하는 일반증권관리자와 각 업무별 관리자로 구분되고, 일선에서 영업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영업담당자는 일반증권영업담당자와 각

업무별 담당자로 구분된다.

또한 과거의 사례에서 보듯이 파생금융상품의 도입 등에 따른 위험의 증가로 증권영업에 필요한 학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추었다더라도 윤리적인 자질을 갖추지 못한 임직원의 영업행위가 증권회사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증권영업에 종사하는 관리자와 영업담당자에 대한 적격성 심사제도를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

증권회사의 관리자와 영업담당자에 대한 자격제도 도입과 자격시험 그리고 적격성 제도 강화 등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증권업협회가 주축이 되어 증권감독기관과 함께 결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증권전문인력에 대한 자격부여는 각 부문별로 소정의 자격시험 합격 또는 연수과정의 이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자격시험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시험과목과 시험주관기관을 결정하여야 하므로 자격시험의 실시는 사전 준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증권업계의 연수를 담당하고 있는 증권연수원에서 연수과정을 개설하여 그 연수과정을 이수하는 자에게 증권전문인력으로서 자격을 인정해 주는 방안이 현실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증권업협회가 중심이 되어 증권감독기관과 학계 인사가 참여하는 「증권전문인력제도 개선위원회」를 설치하여 시험과목, 시험문제의 출제 및 관리 등을 결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가. 관리자

1) 일반증권관리자

일반증권관리자는 선물과 옵션을 제외한 증권회사 영업의 관리 및 감독을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총괄하는 관리자로서 일반증권영업담당자가 관련법규를 준수하도록 내부관리체계를 정비하며, 이들의 영업활동이 적법하게 이행되도록 관리·감독한다.

일반증권관리자는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연수과정을 이수한 후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일반증권관리자는 선물과 옵션 업무를 제외한 모든 증권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자이기 때문에 일반증권영업담당자 자격도 갖추어야 한다. 일반증권관리자가 선물이나 옵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각각 해당업무별로 정해진 관리자 자격을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 일반증권관리자는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보수교육은 한국증권업협회가 관리한다.

2) 주식 및 채권 관리자

주식 및 채권 관리자는 주식과 채권의 위탁영업만을 전담하는 주식 및 채권 영업담당자가 관련법규를 준수하도록 내부관리체계를 정비하며, 이들의 영업활동이 적법하게 이행되도록 관리·감독한다.

주식 및 채권 관리자는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연수과정을 이수한 후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식 및 채권관리자는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보수교육은 한국증권업협회

가 관리한다.

3) 금융상품관리자

금융상품관리자는 증권저축, BMF매출, CD매매 및 중개, CP매매 및 중개, RP, 투자신탁의 위탁상품 등을 담당하는 금융상품영업담당자가 관련법규를 준수하도록 내부관리체계를 정비하며, 이들의 영업활동이 적법하게 이행되도록 관리·감독한다.

금융상품관리자는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연수과정을 이수한 후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금융상품관리자는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보수교육은 한국증권업협회가 관리한다.

4) 선물관리자

선물관리자는 주가지수선물 등 선물거래를 전담하는 선물영업담당자가 관련법규를 준수하도록 내부관리체계를 정비하며, 이들의 영업활동이 적법하게 이행되도록 관리·감독한다.

선물관리자는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연수과정을 이수한 후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물관리자는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보수교육은 한국증권업협회가 관리한다.

5) 옵션관리자

옵션관리자는 옵션거래를 전담하는 옵션영업담당자가 관련법규를 준수하도록 내부관리체계를 정비하며, 이들의 영업활동이 적법하게 이행되도록 관리·감독한다.

옵션관리자는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연수과정을 이수한 후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옵션관리자는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보수교육은 한국증권업협회가 관리한다.

나. 영업담당자

1) 일반증권영업담당자

증권회사에서 선물과 옵션을 제외한 전반적인 증권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자격시험 또는 연수과정을 이수하여 일반증권대리인의 자격을 갖추고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일반증권영업담당자는 영업부서와 지점 등 증권회사 영업단위에서 영업활동이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영업활동 중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증권관리자에게 그 내용을 즉시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는다. 일반증권영업담당자는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보수교육은 한국증권업협회가 관리한다.

담당업무가 선물 또는 옵션 등 특정분야로 제한된 자는 일반증권영업담당자의 자격을 유지할 필요는 없으나, 일반증권영업담당자의 자격을 보유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일반증권대리인의 자격만을 가진 자는 선물 또는 옵션 업무를 취급할 수 없다.

2) 주식 및 채권 영업담당자

주식 및 채권 영업담당자는 증권회사의 영업장이나 그 외의 장소에서 일반투자자에게 주식과 채권의 투자에 관한 상담과 매매거래의 위탁영업을 담당한다.

주식 및 채권 영업담당자는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연수과정을 이수한 후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주식 및 채권 영업담당자는 증권업협회가 실시하는 보수교육과정을 매해 이수하도록 한다.

3) 금융상품영업담당자

금융상품영업담당자는 증권회사의 영업장이나 그 외의 장소에서 증권저축, BMF매출, CD매매 및 중개, CP매매 및 중개, RP, 투자신탁의 위탁상품 등 투자위험이 비교적 낮은 금융상품의 투자권유와 투자상담 등을 담당한다.

금융상품영업담당자는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연수과정을 이수한 후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금융상품영업담당자는 증권업협회가 실시하는 보수교육과정을 매해 이수하도록 한다.

4) 선물영업담당자

선물영업담당자는 증권회사의 영업장이나 그 외의 장소에서 투자자

에게 주가지수선물 등 선물과 관련된 매매거래의 위탁을 권유하거나 투자에 관한 상담을 행할 수 있다.

선물영업담당자는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연수과정을 이수한 후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물영업담당자는 증권업협회가 실시하는 보수교육과정을 매해 이수하도록 한다.

5) 옵션영업담당자

옵션영업담당자는 증권회사의 영업장이나 그 외의 장소에서 투자자에게 옵션거래의 위탁을 권유하거나 투자에 관한 상담을 전담해서 행할 수 있다.

옵션영업담당자는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연수과정을 이수한 후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옵션영업담당자는 증권업협회가 실시하는 보수교육과정을 매해 이수하도록 한다.

<표 VI-1> 증권전문인력제도 개선방안

| 증권전문인력 | 담당업무 |
|--|--|
| <p>관리자</p> <p>일반증권관리자 주식·채권관리자 금융상품관리자 선물관리자 옵션관리자</p> | <p>일반증권영업담당자의 관리·감독 주식·채권영업담당자의 관리·감독 금융상품영업담당자의 관리·감독 선물영업담당자의 관리·감독 옵션영업담당자의 관리·감독</p> |
| <p>영업담당자</p> <p>일반증권영업담당자 주식·채권영업담당자 금융상품영업담당자 선물영업담당자 옵션영업담당자</p> | <p>선물·옵션을 제외한 모든 증권업무 주식·채권의 위탁영업전담 증권저축, BMF, CD, CP, RP, 투자신탁상품업무 등 주가지수선물업무 옵션업무</p> |

3. 적격성 제도

증권시장과 증권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증권산업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이들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도를 제고시켜야 한다. 그런데 현재 적용되고 있는 증권산업 종사자에 대한 적격성 요건은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덜 엄격하다. 따라서 금융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증권산업 종사자에 대한 적격성 요건을 선진국 수준으로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증권산업 종사자에 대한 자격요건은 증권인력을 임원, 종업원, 투자상담사로 구분하고, 각 그룹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증권산업 종사자에 관한 적격성 요건은 종사자의 직위에 따라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증권산업 종사자에 대한 적격성 요건은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증권산업 종사자에 대한 적격성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적격성제도의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따라서 증권전문인력의 등록, 관리, 감독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증권종업원에 관한 규칙」에는 증권종업원에 대한 금지행위가 열거되어 있으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처벌이나 기록유지 책임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증권산업 종사자의 적격성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종사자의 금지행위 위반 등에 관한 기록을 체계적으로 유지 보관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사항을 감안하여 증권산업 종사자에 대한 적격성 기준과 관리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가. 적격성 제도의 관리방법 개선

증권회사의 임원, 관리자 및 영업담당자 등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하도록 한다. 증권회사에 신규로 채용된 임직원의 적격성은 1차로 증권회사가 담당하고, 증권업협회에 등록시 적격성 여부를 증권업협회가 2차로 심사하도록 한다. 특히 증권업협회는 증권영업에 종사하는 관리자와 영업담당자의 자격시험의 합격 결정이나 증권연수원의 과정 이수시 적격성 심사를 시행하도록 한다.

증권산업 종사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들에 대한 등록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비위행위자에 한하여 인적사항 및 비위행위 내용을 한국증권업협회가 관리하고 있고, 증권회사의 임원이나 종업원이 「증권종업원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금지행위를 행한 경우 그 사항이 해임 등 중징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금지행위 사항이 기록 및 보관되지 않고 있다.⁹⁾ 따라서 적격성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금지행위가 해임 등 중징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금지행위를 행한 경우 증권회사는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한국증권업협회에 즉시 보고하고 한국증권업협회는 이를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한다.

그리고 적격성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증권전문인력의 관리 및 제반 법령이나 규정 위반시의 처벌부과를 한 기관에서 담당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증권회사의 임원, 관리자, 영업담당자 등의 등록을 담당하는 한국증권업협회가 이들의 법률이나 규정위반에 대한 처벌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9) 일본에서는 위반시 모든 사항이 기록 보관되고 있다.

나. 적격성 요건의 강화

현 제도에서는 증권거래법 등 금융관련 법령 위반으로 면직 등 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5년이 경과하면 증권회사의 임원이나 종업원으로 근무할 수 있다. 증권회사의 임원이나 종업원으로서 중대한 과실을 범하여 퇴직, 면직, 해임 등의 처벌을 받은 자가 다시 증권영업에 종사할 수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자는 증권회사의 임원이나 증권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①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
- ②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 ③ 증권거래법 또는 외국증권법령, 기타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 ④ 증권거래법 또는 외국증권법령, 금융관련 법령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자
- ⑤ 증권회사의 자체감사 또는 법령 등을 위반하여 증권관리위원회 또는 증권감독원으로부터 면직처분 요구 및 면직 상당 퇴직자 관련 지적사항을 받은 자
- ⑥ 사위(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증권업협회에 등록한 자

그리고 증권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에 열거된 처벌을 받은 자는 처벌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종업원으로 채용되거나 증권영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한다.

- ① 금융관련법령이나 규정 위반으로 해임 또는 면직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증권업협회의 등록이 취소된 자
- ② 증권거래법에 의해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자
- ③ 증권회사의 자체 감사 결과 또는 감독기관으로부터 4개월 이상의 감봉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문책을 받았거나 문책 요구를 받은 자
- ④ 증권거래법에 의해 허가가 취소된 증권회사의 취소 당시 임원이었던 자
- ⑤ 증권거래법 또는 외국증권법령, 기타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
- ⑥ 기타 「증권종업원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금지행위를 수차례에 걸쳐 계속적으로 위반한 자로서 증권업협회가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자

VII. 결론

VII. 결론

증권산업과 증권시장의 대외 개방으로 국내 증권회사는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환경의 변화는 증권회사와 증권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도약의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대응하여 증권전문인력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증권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증권분석을 위한 전문인력으로서 증권분석사의 위상 강화가 필요하다. 신뢰할 수 있는 증권전문가에 의한 기업분석은 기업정보의 투명성 제고와 기업공시 제도의 선진화를 촉진하여 국내외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촉진할 것이며 증권산업의 선진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선진국 수준의 증권분석사를 육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증권분석사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증권산업에 종사하는 증권회사의 임원이나 종업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이들에 대한 적격성 심사방법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증권회사와 증권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는 증권산업과 증권시장의 발전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따라서 투자자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증권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증권영업이나 증권회사 경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증권회사의 임직원은 업무에 따라 관리자 또는 영업담당자 자격을 취득하도록 한다.

그리고 증권회사 임원이나 증권영업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갖추어야 하는 자격요건과 함

계 적격성 기준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 적격성제도는 증권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여 임원이나 종업원에 의한 법령이나 규정 위반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증권시장으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법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보고서에서 검토한 증권전문인력 육성방안은 증권산업과 증권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최선의 방안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방안이 선진국에 비해 낙후된 우리 나라 증권산업과 증권시장의 비약적인 발전에는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 양경철, “증권분석사 제도에 관한 고찰,” 『증권』, 1985. 12, pp. 69~84.
- 윤명수, “투자자문업의 운영실태에 관한 고찰,” 『증권조사월보』, 1992. 11, pp. 3~40.
- 한국증권경제연구원, 『증권분석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토론회』, 공청회자료, 1992. 10.
- 한국증권업협회, 『미국, 일본, 한국의 등록관련제도에 관한 조사』, 내부자료, 1996a.
- 한국증권업협회, 『투자상담사 제도 및 현황』, 내부자료, 1996b.
- 황수성, “한·미·일 증권분석사제도 비교,” 『증권』, 1992. 9, pp. 29~50.
- 日本證券業協會, 公正慣習規則.
- 若杉敬明, 保田圭司, 内堀節夫, 紺谷典子, 『證券アナリスト: 制度と役割』, ビジネス教育出版社, 1987.
- 證券アナリストジャーナル, 『当協會 20年の歩み』, 1983. 1.
- AIMR, *Good Ethics: The Essential Element of a Firm's Success*, 1994.
- AIMR, *Performance Presentation Standards*, 1993.

- AIMR, *Standards of Practice Handbook*, 6th ed., 1992.
- AIMR, *The 1996 Chartered Financial Analyst Examination Program*, 1996.
- AIMR, *The CFA Candidate Study and Examination Program Review*, 1992.
- Anderson, George D. and Robert C. Ellyson, "Restructuring Professional Standards: The Anderson Report," *Journal of Accountancy*, Vol. 162, No. 3, 1986, pp. 92~104.
- Anderson, George D., "A Fresh Look at Standards of Professional Conduct", *Journal of Accountancy*, Vol. 160, No. 3, 1985, pp. 91~106.
- Bishop, Ashton C. and Rasoul H. Tondkar, "Development of a Professional Code of Ethics," *Journal of Accountancy*, Vol. 163, No. 5, 1987, pp. 97~100.
- Chatlos, William E., *Inside Information and the Analyst*, Financial Analyst's Handbook, 1975.
- Denton, Frank T., "The Effect of Professional Advice on the Stability of a Speculative Marke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93, No. 5, 1985, pp. 977~993.
- Dimson, E. and P. R. Marsh, "An Analysis of Brokers' and Analysts' Unpublished Forecasts of UK Stock Returns," *Journal of Finance*, 39, pp. 1257~1292.
- Holland, K. M. and J. G. Horton, "initial Public Offerings on the

- Unlisted Securities Market: The Impact of Professional Advisers," *Accounting and Business Research*, Vol. 24, No. 93, 1993, pp. 19~34.
- ICFA, *The Institute of Chartered Financial Analysts: A Twenty-Five Year History*, 1986.
- Mear, Ross W. T. and Michael A. Firth, "A Parsimonious Description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Financial Analyst Judgment," *Journal of Accounting, Auditing & Finance*, Vol. 5, No. 4, 1990, pp. 501~526.
- Norby, William C., *Overview of Financial Analysis*, Financial Analyst's Handbook, 1975.
- Rogow, Robert B. and Zabihollah Rezaee, "Governmental Accounting and Auditing: Recent Developments Leading Toward Professional Certification", *Accounting Horizons*, Vol. 4, No. 1, 1990, pp. 51~63.
-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Financial Analyst's Handbook*, 1975.
- Sheppard, C. Stewart, *The Making of a Profession: The CFA Program*, AIMR, 1992.
- The Asian Securities' Analysts Council, *ASAC Directory*, 1995.
- Treynor, Jack L., *The Analyst's Role in Portfolio Management*, Financial Analyst's Handbook, 1975.